# 수자원 물환경

##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and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일러두기

국어사전에 의하면 용어는 일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물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수공학과 물관리 체계는 현재의 물관리 용어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학문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물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사전달 수단인 전문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전달과 표현에서의 부정확이나 불일치에서 오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약속된 표현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수자원과 물환경 분야로 분리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용어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음은 물론,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통일과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의 용어로 나타내는 유의어 및 동의어는 물관리 용어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명칭과 개념 사이의 연속성 및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용어의 사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용어사전 발간사업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계획, 수행되었고, 이 용어사전은 학술용어사전이 아닌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지향하고 있다. 용어의 선정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와 관련된 법령, 법정계획, 조사, 기준 및 지침 등에 포함된 용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능형 물관리에 따른 4차산업혁명 기술 및 물산업 관련 용어를 포함하였다.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법정계획, 설계 및 시설기준 등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출처를 병기하였다. 그 외의 용어 중 대부분은 집필진과 자문위원들이 정의를 작성하였으며,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어사전에 수록된 정의를 인용하였다. 용어 및 정의 표기는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 또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하였다.

※ 본 용어사전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에서 제공

# Contents


ㄱ ..... 1

ㄴ ..... 37

ㄷ ..... 45

ㅁ ..... 59

ㅂ ..... 75

ㅅ ..... 93

ㅇ ..... 141

ㅈ ..... 175

ㅊ ..... 209

ㅋ ..... 225

ㅌ ..... 229

ㅍ ..... 241

ㅎ ..... 249

4-5 / A-Z ..... 283

ㄱ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가강수량**

단위면적당 연직기둥 내의 수증기가 모두 응결시켰을 때 물의 총량을 말한다.

**가능최대강수량**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PMP]

**가능최대홍수량**

가능최대강수량으로부터 발생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PMF]

**가동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있는 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고정보]

**가물막이**

하천이나 개울 등의 수중에 공작물(댐 또는 수로, 터널 등)을 설치하려 할 때, 공사구역의 주위를 일시적으로 둘러쌓아 외수의 침입을 방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가뭄**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표수, 지하수, 대기수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가뭄 상황조사**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가뭄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하며, 수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및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뭄위험지수**

가뭄재해인자(강수량 부족 등), 가뭄노출인자(지역내 용수별 수요량 등), 대응능력부족인자(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등)를 중첩하여 산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연관어 : 가뭄지수, 가뭄취약지수]

**가뭄재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생활·공업·농업용 용수공급이 저하되어 산업 및 생활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가뭄지수**

강수, 하천유량, 지하수 등 물 수급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가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를 말한다.

[연관어 : 가뭄위험지수, 가뭄취약지수]

**가뭄취약지도**

가뭄취약성 평가대상의 가뭄조사, 가뭄발생 특성을 고려한 가뭄취약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혹은 유역별 가뭄취약 정도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가뭄취약지수**

가뭄 발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요소들을 정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연관어 : 가뭄지수, 가뭄위험지수]

**가배수로**
(假排水路,
diversion waterway)

댐의 기초굴착 및 본체 축조를 위하여 육상시공이 가능하도록 상·하류 가물막이내 하천이나 개울의 유량을 배제하기 위한 임시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가상수**
(假想水,
virtual water)

농산물, 축산물 등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 만큼의 물을 수입한 효과를 고려하여 가상적으로 확보된 물을 말한다.

[유의어 : 가상물]

[연관어 : 물발자국]

**가설급수**
(假設給水)

비상급수 방법 중 하나로서, 수도관에 가설 급수전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비상급수]

**가압장**

고지대 등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형펌프를 설치하여 압력을 높임으로써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정오수**

가정에서 음용, 음식물 조리, 수세화장실, 목욕, 세탁, 청소, 살수, 세차 등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가정하수**

가정의 배수관에서 배출되어 공공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가축**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인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련영업**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으로 구분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정화시설**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극**

토양이나 암석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유의어 : 공극]

**간극비**

토양이나 암석의 전체 부피에서 간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의어 : 공극비]

**간극수**

토양이나 암석의 빈공간인 간극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공극수]

**간극수압**

토양이나 암석의 간극을 채우고 있는 간극수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

[유의어 : 공극수압]

**간선관로**

여러 개의 하수관이 합쳐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말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간이처리**

강우시에 급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전, 여과 등의 공정을 말한다.

**간헐하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갈수**

자연현상에 의하여 물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균형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가뭄]

**갈수기**

갈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갈수기준년**

댐 등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나 하천유지유량 등의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연도를 말한다.

**갈수량**

1년 동안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갈수예보**

갈수 시 공정한 하천수 사용 유도를 위해 기상 상황에 따른 가용수자원량의 변화를 감시·예측하고, 하천의 물 부족 위험을 발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갈수위**

1년 동안 35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저수위, 평수위, 풍수위]

**갈수조정**

갈수 시에 수리권자가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수리권자 사이에서 취수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조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감세공**

댐, 보, 하상유지시설 등 하류의 고유속 흐름이 세굴이나 침식 또는 구조물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흐름 에너지를 감세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감압 급수**

펌프 수압을 낮추어 배수하는 급수제한 방법을 말한다.

[연관어 : 급수제한, 시간급수]

**감조하천**
(感潮河川, tidal river)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류부에서 수위가 변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갑문**
(閘門, lock)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갑문식 어도**

갑문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는 어도를 말한다.

[연관어 : 계단식 어도]

**강변**

하천 또는 호수 부지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인접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강변여과**

강변을 굴착하여 양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혹은 호수 주변의 모래 여과층 등 자연 지층을 통과한 지표수와 지하수를 양수시설로 취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강변저류지**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등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천변저류지]

**강설**

눈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포함한 수분이 액체나 고체상태(비, 이슬비, 우박, 서리, 눈, 싸락눈 등)로 변화하여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연관어 : 강우, 강설]

**강수강도**

일정기간 동안 내린 강수의 깊이를 내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강수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강수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강수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린 강수의 양을 단위면적당 깊이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크게 강우량과 강설량으로 나눈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강우**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포함한 수분이 액체 상태로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연관어 : 강수]

**강우강도**

단위 시간에 내린 강우량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린 총강우량을 단위시간당 강우량의 깊이로 표시한 것이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강우심도, 강우밀도]
[연관어 : 강우강도공식]

**강우강도공식**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를 산출하는 식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강우량**

강우의 양을 단위면적당의 깊이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우량]
[연관어 : 강수량]

**강우레이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비, 눈, 우박 등의 기상 목표물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 신호를 분석하여, 강우대의 위치, 발달, 분포와 이동방향, 강수량 등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강우유출**

유역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강우지속기간**

강우가 지속된 시간을 말한다.

**강제배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 경우에 펌프를 이용해서 내수를 강제로 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연관어 : 자연배수]

**개거**
(開渠)

땅을 굴착하여 만들어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이 발생하는 덮개가 없는 수로를 말한다.

[유의어 : 개수로]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유의어 : 그린벨트]

**개수로**

자연하천이나 인공적인 개거와 같이 자유수면을 가지며 중력의 지배를 받는 흐름이 발생하는 수로를 말한다.

[유의어 : 개거]

**개인하수도**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 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거점급수**

비상급수 방법 중 하나로서, 사전에 지정된 정수장 등의 시설을 기지로 하여 단수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비상급수]

**건기**

기후가 건조하여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건천**

건천화된 하천을 말한다.

**건천화**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게 되거나 유량이 적어져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격벽**

풀 형식 어도에서 풀을 나누는 벽체로 물이 넘는 월류벽과 넘지 않는 비월류벽을 포함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경계하천**

하천의 상하류, 혹은 좌우안의 행정구역이 다른 관계로 관리청이 다른 하천을 말한다.

**경계홍수위**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를 말한다.

**경도**

물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등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경보수위**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홍수경보 기준수위를 말한다.

**경사낙차공**

흐름의 상하류 낙차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바닥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한 낙차공을 말한다.

**경수**

중탄산염, 황산염, 질산염, 염화물 등과 같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센물]
[연관어 : 연수]

**계단식 어도**

물고기의 이동을 위해 보 구조물과 함께 설치된 계단형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갑문식 어도]

**계류**
(溪流, mountain stream)

계곡에서의 물 흐름을 말하며, 급류라고도 한다.

[유의어 : 급류]

**계면활성제**

물속에서 계면에 흡착하여 표면의 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계획급수량**

물 공급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량을 말하며, 일일 평균급수량, 일일 최대급수량, 시간최대급수량 등이 있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계획급수인구**

수도사업 경영의 허가에 관계된 사업계획에 있어서 결정한 급수인구를 말하며, 계획기간 내 추정된 인구에 계획급수 보급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급수구역 및 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출처 :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방류량**

댐하류 하천의 설계홍수위 및 설계홍수량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방류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계획수문량**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하수도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목표 연도에 최대로 추정한 시간당 오수량을 말한다.

**계획오수량**

생활오수량에 공장폐수량과 지하수량을 더한 값으로, 오수배제계획에서 관로시설, 펌프장시설, 처리장시설 등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오수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계획오염부하량**

하수도 운영 계획목표연차 동안 하수처리구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처리장 내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총량을 말한다.

**계획우수량**

어떤 지역의 하수도를 계획할 때 빗물을 배제할 관로, 펌프장 등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우수 유출량의 값을 말한다.

**계획유입수질**

하수의 계획 오염부하량을 계획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시설기준]

**계획제방**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

[연관어 : 완성제방, 잠정제방]

**계획취수량**

계획 급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취수량을 말한다.

**계획하상고**

계획홍수량에 대한 소류력을 기준으로 하도계획에서 결정하는 하상고를 말한다.

**계획하수량**

하수도의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수의 양을 말한다.

**계획하폭**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계획홍수량**

기본홍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으로, 기본홍수량에서 유역분담 홍수량을 제외하고 하도가 분담해야 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계획홍수위**

1)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의 하천수위를 말한다.
2) 홍수조절을 위해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1), 댐설계기준2)]
[연관어 : 사수위, 상시만수위, 저수위,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고가수조**
(高架水槽,
elevated water tank)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건물옥상이나 별도로 높은 위치에 설치된 저수조에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필요시 중력에 따라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고가저수조]

**고도정수시설**

보통의 정수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약,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트리할로메탄전구물질, 색도,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정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고도처리**

활성슬러지공법(2차 처리)으로 제거되지 않는 질소, 인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리공정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고속여과**

표준적인 급속여과방법 보다 빠른 평균 240 m/day의 속도로 오염수를 여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고수부지**

하도 내의 저수로 및 호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둔치]

**고수위**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를 말한다.

**고수호안**
(高水護岸, high water revetment)

고수위에 해당하는 홍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호안을 말한다.

[연관어 : 저수호안]

**고액분리**
(固液分離)

혼합물 내의 크기나 비중에 따라 고형물과 액상물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유종**

어느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생물의 종을 말하며, 토착종 혹은 특산종이라고도 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고정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없는 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가동보]

**고정상**
(固定床, fixed bed)

하천 및 수로에서 소류력과 하상특성 등의 조건이 변화해도 바닥의 형상이 변화하지 않는 하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이동상]

**고정상 미생물**

하수를 처리하는 미생물이 물속에 부유 성장하지 않고 담체 등에 부착되어 고정형태로 성장 증식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부착 미생물]

**고지배수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의 빗물을 자연유하방식으로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말한다.

**고형물부하**

반응조 또는 단위공정에 유입되는 고형물(고체의 형태를 갖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수도법」에 따른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공공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및 운하)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수역관리자**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용수**

일반 관공서, 학교, 병원, 병영의 급수, 도로의 분수, 하수세탁용수, 소화용수 등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용용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공공폐수 처리구역**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공기혼입장치**

고유속 흐름이 발생하는 댐의 여수로에서 공동현상으로 인한 구조물 표면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급경사수로 흐름에 공기를 혼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공동망**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수문조사망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기본계획]

[연관어 : 국가수문조사망, 기관고유망]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공동처리**

사업자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통합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현상**
(空洞現象, cavitation)

유체 속에서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 물이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공업용수**

공업(제조업)의 작업공정에서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냉각용수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가동, 세척, 냉각 등에 사용되는 용수를 말한다.

[출처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공업용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공업용 수도사업자**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공용용량**

홍수기 제한수위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공유수면**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수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공장폐수**

공장에서 공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폐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공업폐수]

**공적개발원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유의어 : ODA]

**공통유역도**

1) 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
2) 물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등)간 물 관련 기초 자료의 생성·교환 및 활용을 위해 2002년에 작성한 폐합된 공간경계를 말하며,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한 유역도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과잉수**
(excess water)

토양의 공극을 채우고 남은 지하수가 큰 공극으로 옮겨져서 중력에 의하여 흘러내리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중력수]

**관 갱생**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하여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관 여수로**
(管 餘水路,
pipe spillway)

댐 주변이나 댐 밑에 터널을 뚫어 홍수량을 배제하는 여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의어 : 터널식 여수로, 도관 여수로]
[연관어 : 월류식 여수로]

**관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관개기**

관개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관개수로**

관개를 위한 수로를 말한다.

**관개시설**

관개를 위한 장치로 스프링클러, 관개수로, 각종 수문, 저수지, 양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관개용수**

관개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관로**

관으로 이루어진 수로를 말한다.

**관망의 블록화**

상수도 관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수를 균등하게 하며, 시설을 합리적·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단위로 관망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관수로 흐름**

관수로에 물이 가득찬 상태로 흘러 관벽 전체에 수압이 미칠 때의 수로 흐름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관정**
(管井, groundwater well)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시추 또는 굴착한 우물을 말한다.

**관정접합**

관정을 같은 높이로 관을 접합하는 관로 접합방식을 말한다.

**관정주입**

대수층 내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함양시키거나 오염된 대수층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우물을 통하여 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측소**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량·토양수분량 등에 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실시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조사지점을 말하며, 관측소 관리건물을 포함한다.

**관측정**

대수층 내 지하수자원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성한 측정용 우물을 말한다.

**관행수리권**

하천의 연안에서 오랫동안 농·공업에 물을 사용한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수리권을 말한다.

[유의어 : 공유하천용수권]
[연관어 : 허가수리권]

**광산폐수**

광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써 주로 폐광 후에 폐갱구 및 폐석이나 광물찌꺼기 등 적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수를 말한다.

**광역상수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수도법」에 따라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광역상수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광역예보구역**

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기상법 시행령]

**교호사주**
(交互砂州, alternate bar)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의 반대쪽에 제방을 따라 하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사주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복렬사주]

**구조물적 대책**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비구조물적 대책]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말한다.

[출처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국가 물환경종합 정보망**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결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하천 및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물환경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국가가뭄 정보포털**

우리동네 가뭄정보, 가뭄 현황·전망분석, 가뭄시 행동 요령 등 대국민 가뭄정보 서비스를 위한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 가뭄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가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헌법기구를 말한다.

**국가기본도**

일정한 기준과 정확한 측량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국토를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한 기본도(지형도)를 말한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 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과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복합단지를 말한다.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통합 수질현황, 상수도 시설·기술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전국 취정수장 수질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분석, 상수도 통계 발간 자료수집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수도 정보센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센터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국가수문조사망**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구축해야 하는 조사망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라 칭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며, 위원장 1명(환경부 차관)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습지심의 위원회**

습지보전기초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한 심의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지정 생태마을**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의 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환경부장관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보센터를 말하며, NGIC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라 칭한다.

[출처 : 지하수법]

**국가지하수 정보시스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조사 자료와 그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국가통합 인증마크**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을 말한다.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연관어 :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하며,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국민재난 안전포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풍수해 보험, 대피소 정보, 재난복구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부세굴**

교각, 교대, 수제, 제방 등 흐름의 장애물 주위에서 국부적으로 하상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정적 및 동적세굴로 구분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수축세굴, 압력세굴]

**국제공유하천**

2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거나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정보플랫폼**

힝공사진, 국가기본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토종합계획]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부장관이 작성·보급하는 지도를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희귀성·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및 그 밖에 수질·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를 포함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굴입하도**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권역**

여러 수계를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을 말하며,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으로 구분된다.

[출처 : 한국하천일람]

[연관어 :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그라우팅** (grouting)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건축물이나 석축의 틈, 암석의 균열, 투수성 지층 등에 강제로 주입하는 공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말한다.

**근린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친수거점지구]

**글로벌 물기술 허브연대** (Global Water Tech Hub Alliance; GWTHA)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 등 물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6개국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물기술과 관련된 안건을 위해 각국의 사업협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글로벌녹색 성장연구소**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연관어 : 4대강 수계법]

**급경사수로**

여수로 조절부의 말단에서 감세공 시점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급배수 설비 및 저수조 청소업**

상·하수도관을 포함한 급·배수 설비의 세척 및 지하·옥상 저수조를 청소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급속여과지**

원수 중의 현탁물질(물을 흐리게 하는 부유물질)을 약품으로 응집시킨 후에 입상여과층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물을 통과시켜 여재에 부착시키거나 여과층에서 체거름작용(여재층의 공극보다 큰 입자를 걸러내는 것)으로 탁질을 제거하는 고액분리 공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급수**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한 급수관에 의하여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배수]

**급수계통**

상수를 취수지에서 급수지까지 공급하는 과정들, 즉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급수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급수구역**

배수관을 가설하여 급수가 가능하게 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급수기구**

급수관에 직결되는 급수설비의 구성으로 급수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역류방지기구, 안전기구 및 각종 물 사용 특수기구 등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급수대상**

급수지역 내에 상주하는 인구로서 수도로부터 급수를 받고 있는 급수인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급수량 원단위**

단위시간당 공급되는 물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급수보급률**

급수구역 내의 전체 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비를 말한다.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급수시설**

수원지, 정수장, 배수지까지 급수량을 공급하는 송수관, 배수구역별로 나누어 보내는 배수관, 고지대로 송수하기 위한 가압장 등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급수전**
(給水栓, hydrant)

급수장치의 말단부에 설치하여 통수·개폐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수도꼭지라고도 부른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수도꼭지]

**급수제한**

취수량 부족, 수질오염 사고, 급·배수관로 수리 등으로 인해 계획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 수요자에게 물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감압 급수, 시간 급수]

**급수조정**

주수원의 용량 및 용수 부족시 인근댐 및 저수지에서 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고유망**

수문조사 기관간의 자료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관별 자체 활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문조사망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기본계획]

[연관어 : 공동망]

**기득수리권**

댐사용권 설정을 기준으로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관행수리권과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허가수리권을 말한다.

**기득하천 사용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권자·양식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본배출 부과금**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기본홍수량**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기상**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관측**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레이더**

기후 추적 및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로 전파를 발사하여 대기 중의 비구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여 강수지역과 강수의 세기를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기상법**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시설**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업무**

기상관측 및 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등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기상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연보**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간행물로 발간한 자료를 말한다.

**기상예보**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위성**

기상예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기상위성관측망**

기상관측을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관측망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자료 개방포털**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말하며, 날씨 데이터와 기후통계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재해**

기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 및 기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해를 말한다.

**기상정보시스템**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측기**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상학적 가뭄**

특정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수**
(汽水, brackish water)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기수역**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한다.

**기저시간**

수문곡선에서 직접유출이 시작되는 점부터 직접유출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기저유출**

강우나 지표수가 지하수에 함양된 뒤 대수층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기준갈수량**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기준수위표**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표척(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기타 수처리제 제조업**

살균소독제, 응집제, PH조정제, 활성탄을 제외하고, 수처리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타 약품들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

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기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뜻한다.
[출처: 기상법]

**기후변화**

인간 활동 또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기상법]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에어로졸의 변화 등에 대한 특정 시나리오를 기후변화 모델에 적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전망정보를 말한다.

**기후변화감시**

지구대기감시와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후시스템(대기권, 빙권, 수권, 지권, 생물권)의 장기 변화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기후업무규정]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깃대종**
(flagship species)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동식물로,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 ㄴ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나노여과법**

한외여과법과 역삼투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나노여과막 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연관어 : 역삼투법, 정밀여과법, 한외여과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연관어 : 4대강 수계법]

**낙차공**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통 50 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대공]

**난류**

유속과 압력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는 유체 흐름을 말한다.

[연관어 : 층류]

**난분해성 (유기)물질**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불가능한 것, 또는 분해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물질을 말한다.

**남북공유하천**

남한과 북한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내륙습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내부여과**

입경이 크고, 균등계수가 작은 여과재를 사용하여 여과층 표면에서의 플록(물에 응집제를 혼합시켰을 때 형성되는 응집물) 포착을 적게 하고, 여과층 내부에 플록을 침입시켜 내부에서 억류하는 여과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내수배제시설**

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내수재해**

본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으로 인한 하수도 및 펌프장의 내수배제능력 부족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냉·온수기**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 지하수를 냉수 및 온수로 변환시켜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노면배수시설**

도로부지내 강우 또는 강설에 의해 발생한 우수와 도로 인접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노치**
(notch)

계단식 어도에서 격벽의 상단의 일부를 낮게 파놓은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녹비**
(綠肥, green manure)

우리말로는 풋거름이라 하며 생풀이나 생나무 잎으로 만들어 충분히 썩지 않은 거름을 말한다.

**녹색기술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녹색기후기금**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녹조 (류)**

많은 양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녹색의 조류를 말한다.

**녹조현상**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 등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논습지**

벼베기를 마친 겨울논에 물을 채워 철새들이 찾아오도록 만든 습지를 말한다.

**놀둑**

상하류 제방높이 보다 낮거나 불연속 구간을 두어 홍수 시 유수의 범람을 허용하는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농어촌 지하수 관리시스템/ 농어촌 지하수넷**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생성되는 지하수 주제도정보, 시설정보, 관측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하수 활용시스템을 말한다.

**농어촌용수**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요, 개발, 이용·배분과 보전·관리, 농어촌용수 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 정비를 위한 토지·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농업용수**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을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사업**

기온, 강수량, 일사량, 토양수분 농업기상 관측정보와 분석정보, 응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기상정보서비스를 말한다.

**농업날씨365**

경작과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농업배수**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유의어 : 농업용 댐]

**농업용 저수지**

농작물 생육의 안전을 기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경지에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농촌용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운영업**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물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관련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농업적 가뭄**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 등으로 표현된 농업에 영향을 주는 가뭄을 말한다.

**농지공간포털**

농지정보화사업에서 구축한 전국 농지의 지도서비스 및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농지배수**

농경지의 과잉지표수와 지하수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농업용어사전]

**농지정보화사업**

농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농지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농촌용수**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서, 관개용수, 수로유지용수, 영농용수 등 농업에 이용되는 농업용수와 지역사회 활동용수, 환경 용수 등 광의의 지역용수를 포함하는 용수를 말한다.
[연관어 : 농업용수]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농촌용수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난재해, 수자원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RAWRIS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라 칭한다.

**농축조**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최초 침전지 찌꺼기, 잉여찌꺼기 등)를 농축하고, 찌꺼기 체적을 감소시키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농축찌꺼기**

자연의 중력에 의한 침강, 압밀 또는 기계에 의한 원심력 등에 의해 농축된 찌꺼기를 말한다.

**누가우량곡선**

누적 강우량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누수**

관에서부터 외부로 액체가 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지상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상누수와 지하매설관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누수로 구분된다.

**누수감지시스템**

누수에 의해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하여 누수지점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누수량**

송수시점 이후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수량을 말한다.

**누수율**

상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수량 중 누수로 인하여 손실되는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늪**

습지의 한 가지 종류이며 수심 3 m 이하의 낮은 호소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늪지, 습지]

# ㄷ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다기능보**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다목적댐**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저류지**

치수 중심의 강변저류지 및 조절지에 이수, 환경, 친수 등의 기능을 추가한 저류지를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다자성 양자원조**

공여국이 수원국, 지역, 분야, 주제 등 용도를 지정하여 국제기구에 기금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의어 : 지정기여, 비핵심기여]

**다층식 침전지**

침전지를 상하 방향의 여러 개의 층으로 조합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최종침전지, 최초침전지]

**단기예보**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 3일 이내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출처 : 예보업무규정]

**단위공정**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각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단일처리공정을 말한다.

**단위유량도**

특정 단위시간 동안 균일한 강도로 유역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우량(강우량 중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부분; 1cm)으로 인하여 유역 출구에 발생하는 직접 유출량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단일목적댐**

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의 단일목적과 용도로 건설하는 댐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사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담수**
(淡水, fresh water)

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민물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유의어 : 민물]
[연관어 : 염수]

**담수생태계**

담수환경에 존재하는 생물 및 비생물적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담수호**

담수로 형성된 호수를 말하며, 호수에 함유된 총염분의 양이 1리터 중에 500㎎ 이하인 호수이다.
[연관어 : 염수호]

**담수화**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해수담수화]

**담수환경**

담수 및 담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

**대공**
(帶工)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 cm 미만) 하상유지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띠공]
[연관어 : 낙차공]

**대권역**

1) 「물환경보전법」 상의 수계영향권 구분에 따른 대규모 권역을 말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으로 구분한다.
2) 수자원단위지도 상에 21개로 구분된 대규모 권역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데이터포털]
[연관어 : 중권역, 소권역, 표준유역]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대기**

지구 중력에 의해 묶여있는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대수성시험**

대수층의 각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대수층에 양수정과 관측정을 설치하고 일정양의 물을 양수(또는 주입)하여 관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위변화를 관찰하는 시험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대수층**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이 좋은 지층, 지층군 또는 지층의 일부를 말하며, 비피압 대수층(자유면대수층)과 피압대수층으로 구분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대유역**

대하천의 유역을 말한다.

**대조평균 간조위**

조석 차이가 가장 큰 시기에 해면이 가장 낮아진 수위들의 평균값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대조평균 만조위**

밀물에 의하여 가장 높게 형성된 수위들의 평균값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대체수원**

수량 고갈이나 수질 오염으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 수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수원을 말한다.

[유의어 : 보조수원]

**대체수자원**

전통적인 수자원 확보(댐 용수, 하천수, 지하수 등)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인 빗물, 해수담수, 지하수인공함양 등으로 신규 확보된 수자원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환경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공동개최하여 물산업 전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행사를 말한다.

**대형빗물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저류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댐**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 관리**

댐과 그 저수 및 저수구역 내 토지, 수면, 수질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댐 관리청**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 길이**

댐마루에서 댐의 종단방향 총길이를 말하며, 댐체에 접속하여 여수로가 있을 경우에는 여수로 길이를 포함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댐 높이**

댐마루의 상류단을 통과하는 연직면과 기초면이 교차하는 최저 기초지반의 표고차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댐 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히 댐의 용수공급량을 조정하여 댐의 적정 용수공급능력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 따라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댐·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과 수계별로 구성한 협의회를 말한다.

[출처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댐건설 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말하며, 건설의 목적, 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규모·형식, 기간 댐사용권, 비용, 토지·건물 수요 권리 세목, 환경피해 감소 및 수질보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실시계획**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장기계획**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하며, 댐건설의 기본방침, 각종 용수의 수급 전망, 수계별 댐건설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하천법」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수계별로 댐, 보,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 등 하천시설 및 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준지점의 유량과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댐부피**

댐마루에서 댐의 종단방향 총길이를 말하며, 댐체에 접속하여 여수로가 있을 경우에는 여수로 길이를 포함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댐사용권**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사용권설정 예정자**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사용권자**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댐 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댐수탁관리자**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댐의 관리를 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용수**

댐 및 하굿둑에서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댐·저수지 안전성 강화사업**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홍수·지진 등 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비하여 댐의 시설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댐주변지역**

저수면적이 200만 ㎡ 이상인 댐 또는 총저수용량이 2천만 ㎥ 이상인 댐으로부터 5 ㎞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간한 법률 시행령]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시행하여야 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덧쌓기**

댐 축조 완성시에 장래의 침하를 고려하여 댐 설계단면보다 더 쌓은 것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도달시간**

하천 등의 일정구간의 상류부에서 하류부까지 물이 흘러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도랑**

하천보다 작은 개념으로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도류벽**
(導流壁,
training wall)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분이 막히지 않은 격벽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도벽]

**도류제**
(導流堤,
training levee)

하천이 다른 하천이나 바다 또는 호수로 유입되는 경우에 유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도수** (導水)

원수를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도수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도수로**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 유입부까지 보내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도수터널**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산 등을 뚫어 만든 물길을 말한다.

**도수효율**

수원에서 취수한 수량과 정수장에 도달된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목적, 내용 및 기간, 효과, 재원조달계획,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생태현황 지도**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5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용수**

도시에서의 생활, 업무, 생산활동, 방재 등에 필요한 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총칭을 말한다.

**도시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도시조성과 관련된 제반 개발사업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도시침수 대응사업**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말한다.

**도시하천**

유역의 전부 혹은 대부분의 면적이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돌발강우/ 돌발호우**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연관어 : 집중호우]

**돌발홍수**

돌발호우로 인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짧은 기간에 급증하여 발생하는 홍수를 말한다.

**동결심도**

지표면 아래의 온도가 0도 이하가 되어 동결하는 층과 동결하지 않는 층의 경계선(지하 동결선)의 깊이를 말한다.

**동적세굴**

세굴공 상류부로부터 유사가 세굴공 내로 유입되고 동시에 세굴공으로부터 유사가 하류부로 유출되어 세굴공의 깊이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평형 세굴심에 도달되는 세굴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국부세굴, 정적세굴]

**둑높임**

저수지의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 둑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둔치**

강, 호수 등 물가의 가장자리나 둔덕진 곳을 말한다.

[유의어 : 고수부지]

**드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제를 말한다.

[유의어 : 무인비행장치]

**등류수심**

유량, 수로단면 및 수로경사가 일정하여, 단면평균 유속과 수심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수로 흐름의 수심을 말한다.

**등우선법**

등우선 간의 면적을 구하여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디지털 뉴딜**
(digital new deal)

정보통신(ICT)을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를 말한다.

**디지털 물관리**
(digital water management)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자원·수생태, 상수도, 하수도 및 폐수처리 각 부문의 효율 향상 및 가치를 창출하는 물관리를 말한다.

**디지털 물시장**
(digital water market)

스마트 물관리를 측면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확산이 가능한 시장을 말한다.

**디지털 워터 플랫폼**
(digital water platform)

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물 데이터를 쉽게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여 국내외에 서비스하기 위한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DT)

현실 세계의 물리적 대상(사람, 사물, 공간,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대상으로 복제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해결 또는 수정 및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모의를 디지털 세계에서 실행하여 최적의 해답을 찾는 기술을 말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 이상 500 ㎥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막여과**

막(membrane)을 여재로 사용하여 물을 통과시켜서 원수 중의 불순물질을 분리제거하고 깨끗한 여과수를 얻는 정수방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연관어 : 나노여과법, 역삼투법, 정밀여과법, 한외여과법]

**만곡비**
(彎曲比)

자연하천에서 두 지점을 지정하였을 때 직선길이와 곡선길이의 비를 말하며, 사행하천에서 하천의 휘어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출처 : 물백과사전]

**만곡수로**
(彎曲水路,
sinuous channel)

곡선의 형태를 띠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곡선수로, 굴절수로]

**만제유량**
(滿堤流量,
bankful discharge)

하천 내 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 제방(둑)이 막 잠기려는 순간의 유량으로 하천의 양안을 통하여 물이 넘치는 상태일 때의 유량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강턱유량]

**망상하천**
(網狀河川,
braided river)

하천 경사가 완만하며 수심이 얕은 여러 줄기의 그물 모양으로 이루어진 하도망을 가진 하천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맨홀 제조업**

주철·콘크리트·플라스틱·석재 등을 재료로 상수도·하수도용으로 사용되는 맨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먹는물**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유의어 : 음용수, 식수]

**먹는물 공동시설**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생산업**

먹는물 중 수돗물을 제외한 제품(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먹는물관련영업**

먹는샘물·먹는염 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검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해야 하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지하수인 샘물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유의어 : 생수]

**먹는염지하수**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염지하수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먹는해양심층수**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면적강우량**

하천 유역 등에 내린 평균적인 강우량을 말한다.

[유의어 : 면적우량, 지역강우량, 지역우량]

**모니터링**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상태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어 : 감시, 관측, 측정]

**모래여과**

모래층을 통과시켜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걸러 내는 정수 공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모래여과지**

모래를 여과재로 사용하여 물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목표수질**

대상 지역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 실현가능한 수질 목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무수수량**
(無收水量,
non-revenue water)

정수장에서 소비지로 공급한 물 중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누수가 되었거나 소비자에게 도달하였지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물의 양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유효무수수량]
[연관어 : 유수수량, 유효수량]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출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유의어 : 드론]

**무인비행장치 측량**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수치표면 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출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무인비행장치 항공사진 촬영**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항공사진의 촬영을 말한다.

[출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물 (관리) 거버넌스**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물 (관리) 기반시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댐·저수지, 하천, 상·하수도 등 물관리 관련시설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 사용기기**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물 재이용 관리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물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 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사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의어 : 물재생]

**물계정**
(water accounting)

국가의 수자원량(부존량, 수리권 등 물에 대한 권리, 실제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실제 사용량(경제 영역)을 통한 물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시행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 정보유통 시스템**

물관련기관의 수자원정보를 온라인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하며, 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라 칭한다.

**물관리 협정**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수량·수질·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용 원격 측정, 운영 및 제어장비 제조업**

물관리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측정장비(센서), 원격 운영·제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관리용 토목 및 지반 공사업**

상하수도, 댐, 제방 등 물관리용 토목시설물 공사 및 하천, 저수지 등 정비를 위한 지반공사, 상하수도 본관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관리일원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져 있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소관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물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기업**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놀이형 수경시설**
(水景施設)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의 생산 전 과정 동안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한다.

[연관어 : 가상수]

**물복지**

광역,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여 건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물분쟁**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투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물빈곤지수**

국가의 복지 수준과 물이용 가용성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수치로서, 물 부족이 인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1인당 가용 수자원량, 수자원 접근성, 사회경제요소, 물이용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한 지표를 말한다.

**물산업**

수도시설, 하수도 설치·관리, 먹는물관련영업, 해수담수화시설, 물의 재이용, 폐수의 처리 또는 이용,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하천공사 및 정비, 댐의 건설·이용·관리, 물 이용 또는 관리 사업 및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관련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공사업**

철제 갑문, 댐 수문 등 물산업 관련 철강 등 금속제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기자재 및 수질 시험·분석업**

물산업 관련 각종 기자재 및 수질 등을 시험, 성분분석, 인증,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측정대행업, 먹는물 검사기관)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방수 및 도장공사업**

물관련 건축물, 시설 등의 방수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보링, 그라우팅, 지하수 굴착, 관정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수중공사업**

댐, 하천 시설, 소하천 정비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수중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시설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산업 관련 시설 제작·건설·운영을 위한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환경영향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시설 시험, 검사 및 자문 서비스업**

물산업 관련 시설 노후도, 기능, 파손 등 현황을 검사·진단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업**

물산업 관련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2종 이상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보수·보강, 개·대체, 수선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관련 측량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업**

물산업 관련 시설 설치, 개량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 측량 및 지리정보시스템 정보를 구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 기술심사단**

우수제품 등의 검증·평가, 도입실적 평가,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및 성과평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심사단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 실증화시설**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실증화집적단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실태조사**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하며,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관련 연구·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국내외 검증·인증 현황, 지식재산권 획득·보유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진흥시설**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물산업 연구·진흥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통계조사**

국내 물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

환경부에서 국내 물산업의 일반 현황을 매년 조사·분석하여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물산업 표준화사업**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용 강제 관류 및 연결구류 제조업**

강재를 압출·단조·인발·용접·기타 가공방법으로 가공하여 물산업용 강관(여러가지 재질로 구성된 복합관 포함) 및 연결구류(관과 관을 연결하는 다양한 부속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구리 및 구리합금제 관류 및 연결구류 제조업**

구리 및 구리합금재를 압연·압출·인발·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물산업용 구리 및 구리합금제 관 및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기타 비철금속제 관류 및 연결구류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을 압연·압출·인발·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물산업용 비철금속 관 및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기타 시멘트·콘크리트·점질토제 관류, 연결구류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를 제외한 시멘트, 콘크리트, 점질토, 복합재료 및 인조석 등을 재료로 기타 물산업용 관, 연결구류, 건물부착용 장치물 등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드레인 수도꼭지 및 특수탭 제조업**

물산업 관련 드레인(배수관) 수도꼭지, 특수 탭, 및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가정용 수도꼭지 제외)을 말한다.

**물산업용 밸브 제조업**

물산업 관련 밸브 및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약품보관탱크, 밀폐형 고압탱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폐액(사용 목적이 끝나고 폐기된 액체), 슬러지, 혹은 수처리 공정을 위한 액체 혹은 가스형태의 약품 등을 저장하는 밀폐형 고압탱크 및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주철제 관류 및 연결구류 제조업**

주형, 주조 또는 원심 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물산업용 주철관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제조업**

물산업 관련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용 플라스틱제 관류, 연결구류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를 사용하여 물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관(복합관 포함)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산업펀드**

물산업 및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사, 지자체, 벤처투자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의 그린뉴딜 및 물산업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물수요관리**

물절약과 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 소비자의 소비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계획과 수단을 말한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물수지**

수문순환 과정에서 유입량, 유출량, 증발량, 침투량, 용수공급량, 회귀수량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필요 유량의 충족 및 과부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물수지분석**

한 유역의 장래 안정된 용수수급을 계획하기 위하여 유역 장래의 용수수요와 기준갈수년도의 자연유량을 비교함으로써 유역내 하천에서의 물수지를 예측하고, 용수가 부족할 경우, 용수를 공급할 댐 등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물순환**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의어 : 수문순환]
[연관어 : 인공계 물순환, 자연계 물순환]

**물순환 선도도시**

도시의 물순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2016년에 선정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김해시, 안동시 등 5개 도시를 말한다.

**물순환관리**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과 관련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순환율**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스트레스**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대비 물 이용량(수요량)의 비율(%)을 뜻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에너지-식량 연계기술**
(Water-Energy-Food Nexus)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기술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물재생**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재사용하거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체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물 재이용]

**물절약전문업**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물중립**
(water neutrality)

유역내 신규 도시·택지개발 시 물수요 유발, 불투수면적 증가 등 물순환 왜곡을 기존도시와 함께 물순환 사업으로 제로화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펀드**

유·무상 원조자금, 미래환경산업펀드(환경부에서 조성하여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목표기준**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목표기준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 정보시스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결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물환경종합정보망(WEIS;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측정망**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측정망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자료의 관리·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출처 : 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

**밑다짐**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 ㅂ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바닥보호공**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다공성소재 등 투수성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바이오가스**
(biogas)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 등의 가스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바이오매스**
(biomass)

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유기 생물체를 말한다. 생태학적으로는 단위 시간 및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중량 또는 에너지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유의어 : 생물량, 생물체량, 생물연료]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농림 부산물, 산업체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반대수층**

대수층 사이에 존재하며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느리게 유동시키는 투수성이 낮은 지층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반류수**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분리액, 소화탈리액, 탈수여액 및 여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역세척수 등을 재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공정으로 반송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설계기준]

**반류수처리**

찌꺼기 처리과정 등에서 생기는 반류수를 하수처리공정으로 반송하여 처리하거나, 반류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의 반류수 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사구**
(反砂堆, antidune)

물,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퇴적하여 생긴 언덕으로서 상류면이 하류면보다 가파른 형태를 지닌 사구(모래 언덕)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반송수**

찌꺼기 탈수여액, 스컴배수, 역세척배출수 등으로 다시 처리공정으로 반송되는 물을 말한다.

**반송찌꺼기**

하수처리장의 2차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로 반송되는 찌꺼기를 말한다.

**반응조**

제한된 공간에서 내용물로부터 원하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기 또는 탱크를 말한다.

**반입정화시설**
(搬入淨化施設)

오염된 토양을 들여와 토양의 정화 기준 이내로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발전(전)용댐**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댐을 말한다.
[유의어 : 발전댐, 수력댐]

**발전소온배수**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방류관**

방류를 하기 위해 설비된 시설 중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방류구**

방류관의 출구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방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에서 공공수역 또는 해역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유출수]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하수도법]
[유의어 : 방류기준]

**방류수역**

하수처리장, 펌프장, 우수토구로부터 방류수가 배출되는 공공수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방류하천**

하수·분뇨, 산업폐수 또는 이들의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방사상 집수정**
(放射狀集水井)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수층의 조건이 좋은 장소에 우물통을 설치하고, 그 측벽에서 대수층내로 다공집수관을 수평 방사상으로 매설한 우물을 말한다.

[유의어 : 수평방사형 집수정]

**방수로**

1)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 댐 하류 감세공으로부터 하류 하천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1], 댐설계기준2)]

**방재기술**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방재성능목표**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의 목표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방재시설**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배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지로 유입되는 토사를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배사구**
(排沙口, sluicing outlet)

보나 댐 등의 취수구 부근 바닥에 쌓이는 토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로를 말한다.

**배수**
(排水, drainage)

불필요한 물을 시설의 외부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배수**
(配水, water distribution)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어 : 급수]

**배수간선**
(排水幹線, outlet ditches)

관 배수체계를 통한 유출 등 발생하는 모든 지표면 유출을 모아 이를 강, 호수, 바다 등과 접하는 최종적인 배출구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배수구역 전체를 지배하는 배수로를 말한다.

[유의어 : 간선배수로]

**배수갑문**
(排水閘門, drainage sluice gate)

방조제나 하굿둑 등으로 인해 해수와 담수가 차단된 지역에서 내수를 바다쪽으로 배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홍수시 배수가 가능해야 하고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아졌을 때 해수가 담수역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배수관**
(配水管, distributing pipe)

수원에서 급수지까지 물을 송수할 때 사용되는 관로를 말한다.

**배수관**
(排水管, drain pipe)

오수 및 우수를 배수할 때 사용되는 관로를 말한다. 농지의 토양 내 과잉수를 배제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하는 관을 배수관이라 칭하기도 한다.

**배수관망**
(配水管網, water distribution network)

여러 개의 배수관이 폐합관망을 형성하고 있는 관수로 체계를 말한다.

**배수구**
(排水口, drain opening)

배수관(排水管)의 출구를 말한다.

**배수구**
(排水溝, drainage ditch)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로를 말한다.

**배수구역**
(配水區域, distributing area)

배수지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배수구역**
(排水區域, drainage area)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유의어 : 유역, 배수유역, 집수구역]

**배수로**
(排水路, drainage canal)

우수나 오수, 지표수 등을 배출하기 위해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설치된 도랑이나 수로를 말한다.
[출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배수문**
(排水門, drainage gate)

배수구역의 말단 저수부, 즉 내수하천(물을 내보내는 하천) 하류와 외수하천(배수된 물을 받아들이는 하천)이 합류하는 부근에 설치하며 홍수 시나 만조 시 외수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배수본관**
(配水本管, distribution main)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지역까지 보내는 배수관 중 근간이 되는 수도관을 말한다.

**배수설비**
(排水設備)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배수시설**

물공급을 위한 시설(配水施設) 또는 오수 및 우수 배제를 위한 시설(排水施設)을 말한다.

**배수암거**
(排水暗渠, drainage culvert)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로를 말한다.

**배수용 그레이팅 제조업**

강재, 석재 등을 재료로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그레이팅(하수구의 뚜껑에 사용되는 철제 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수유역**
(排水流域, drainage basin)

어느 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

[유의어 : 유역, 배수구역, 집수구역]

**배수지**
(配水池, distributing reservoir)

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 해당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따라 배수하기 위한 저류지를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배수지관**
(配水支管, distributing branch)

상수도의 배수본관에서 분기되어 마지막 급수처에 이르는 수도관을 말한다.

[출처 : 배수시설 설계기준]

**배수펌프장**

자연배수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내수배제를 위하여 설치된 펌프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빗물펌프장]

**배수하천**

특정유역에 강수가 발생했을 때 그 강수를 감당하여 배제하는 하천을 말한다.

**배수효과**
(背水效果, backwater effect)

댐과 보 등 하류에 설치된 수리구조물의 영향으로 상류 하천구간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 본류 수위 상승의 영향으로 유입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 또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배출부하량**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출처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지침]
[연관어 : 유달부하량]

**배후습지**

자연제방의 배후에 홍수시 물이 다시 하도로 유입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습지를 말한다.

**범람**

하천 또는 바다의 물이 홍수 또는 파랑 등에 의하여 제방이나 방파제를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범람구역/범람지역**

범람에 의하여 침수된 구역을 말한다.

**범람원**

하천의 무제부 또는 유제부 구간에서 홍수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자연제방]

**보**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하천보]

**보링**
(boring)

토질이나 암석에 대한 조사 또는 물, 석유 등의 채취 목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목용어사전]

**보전용도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보전지구**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을 말한다.

**보조댐**

본 댐의 저수위(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되는 댐을 말한다.

[유의어 : 안장댐]

**보조수원**

극심한 가뭄의 발생 등으로 주수원이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일정기간 또는 일정량 대체 가능한 수원을 말한다.

[유의어 : 대체수원]

**보조수원 능력**

지역의 주수원인 댐 및 하천수 등 이외에 주수원의 기능을 보조하여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조기반시설의 능력을 의미한다.

**보조여수로**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초과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기존 여수로와 동시 또는 별도로 운영하는 여수로로서 비상상황시 방류기능을 포함하는 여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복개천**

주로 도시화로 인하여 형성된, 하천이 흐르는 위가 구조물로 덮인 하천을 말한다.

**복렬사주**
(複列砂州, multiple bar)

하폭과 수심의 비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하나의 횡단면에 2개 이상 형성되는 사주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교호사주]

**복류수**

하천, 호소의 저부(바닥 아래 부분)나 측부(옆 부분)의 사력층을 통과하는 지하수의 한 종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복원지구**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또는 인위적으로 보존한 지구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복통**
(伏桶, diversion tunnel)

대댐 시공시 댐체 내부에 마제형 또는 박스형 터널을 설치하여 댐 축조시에는 가배수 터널로 이용하고, 댐 완공 후에는 취수용 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복합댐**

서로 다른 형식의 댐을 댐축 방향 또는 댐 상·하류 방향으로 결합시켜 하나의 댐으로 하는 형식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복합유역**

투수유역과 불투수유역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유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본류**

하천 수계에서 가장 하류에 해당하는 하천, 즉 하천의 주류를 말한다.

[연관어 : 지류]

**봉부자**
(棒浮子, rod float)

유수중에 부자를 띄워서 일정거리를 이동한 시간을 측정하여 유속을 결정하는 기구로 주로 홍수기에 사용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영양화**

하천이나 호수, 바다와 같은 수체에 생활하수나 가축분뇨 등의 유입으로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해진 상태를 말한다.

**부유물**

수계와 저수지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초목류, 생활쓰레기, 무기성 광물질 등 고체성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부유물질, 스컴]

**부유물질**

수중의 부유성 입자(suspended solid) 혹은 부유사(suspended sediment) 등과 같이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연관어 : 부유물, 스컴]

**부유사**

하천이 운반하는 토사 중에서 물에 떠서 운반되는 토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소류사]

**부정류**

개수로 흐름의 분류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말한다.

[연관어 : 정상류]

**부착돌말지수**
(trophic diatom index; TDI)

영양염(총인, 총질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부착돌말류)의 오염민감도, 상대풍부도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부패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의 구성 중 하나로 공기 공급없이 혐기성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분뇨처리**

분뇨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장**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분류식 하수도**

오수와 우수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별개의 관로를 통하여 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빗물이용, 침투, 저류시설 등을 이용하여 강우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분산형 수처리**

도시 내 정수처리시설에서 원수를 정수처리하여 소비자 가까이에서 공급하는 용수공급방식으로서 공급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 상수도 유지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분산형 실증화시설**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물산업 공공기관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조성·운영하는 실증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분수계**

상이한 유역이 만나는 경계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유역경계]

**분수공**
(分水工, turnout)

관개용수를 상위수로에서 하위수로 또는 직접 농경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리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분수전**
(分水栓)

배수관으로부터 급수관이 분기할 때 배수관에 부착하여 급수관과 연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불투수면**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표면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불투수면적률/불투수율**

전체 면적 중 불투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불투수층**

지하수를 통과시키기 어렵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층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비구조물적 대책**

유역관리, 홍수예보, 홍수터 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방지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치수대책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구조물적 대책]

**비대수층**

물을 포함하지도 않으며 물을 통과시키지도 않는 불투수성 지층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비산출량/비산출률**
(非産出量/非産出率, specific yield)

물로 포화된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중력으로 배출되는 물의 부피와 시료 전체 부피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비상급수**

급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음용수를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거점급수, 운반급수, 가설급수]

**비상급수시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말한다.

**비상대처계획**

태풍·지진·해일·댐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경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비상방류**

댐 하류지역의 가뭄, 수질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여수로**

정상적인 설계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여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비양수량**

단위 수위강하량에 대한 우물 양수량의 비, 즉 양수량을 지하수 수위강하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유의어 : 비용출량]

**비오톱**
(biotope)

특정한 동물과 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대체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생물서식지를 지칭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유의어 : 바이오톱]

**비월류벽**

어도에서 물이 넘치지 않는 벽을 말한다.

[연관어 : 월류벽]

**비월류부**

댐 여수로 중 물넘이부(월류부)가 아닌 부분을 말한다.

**비유량**

유역의 어떤 지점에서의 유량을 그 지점까지의 유역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유역형상이나 하상형태가 유사할 경우 미측정 지점에 적용 시 혹은 유역 간의 특성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비유사량**

단위기간(1년) 및 단위유역면적(㎢) 당의 토사유출량(ton/㎢/year)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

도시노면이나 농경지, 야적장 등과 같이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불특정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유의어 : 비점원오염]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물질**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관리 시행계획**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 수립,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관리대책으로서 관리 목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비탈덮기**

유수, 유목(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나무) 등으로부터 제방 또는 호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비탈멈춤**

비탈덮기의 밑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덮기를 지지하고 침하, 세굴 등에 의한 움직임을 막으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비피압대수층**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불투수층과 지표 사이에 존재하는 대수층을 말한다.

[유의어 : 자유면대수층]
[연관어 : 피압대수층]

**비활용용량**

댐 바닥에서부터 저수위까지의 용량으로서 평시에는 용수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의어 : 불용용량]

**빅데이터**
(big data)

이해할 수 없었던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로, 기계 학습이나 자연어 처리, 각종 통계 기법, 분산 병렬 컴퓨팅 기술 등 다양한 정보처리 IT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빈도해석**

주어진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수문량(확률강수량, 확률홍수량 등)을 추정하는 확률론적 해석을 말한다.

**빈영양**

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물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이 적어 생산력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빗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온도 하강과 더불어 일어나는 응결현상에 의해 물방울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물방울이 중력의 영향으로 구름으로부터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우수]

**빗물 이용량**

빗물이용시설의 연평균 이용량을 말한다.

[출처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빗물관리**

건축물의 지붕과 도로 등의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강우를 이수·치수·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받이**

도로내 우수를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주로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우수받이]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외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자연배수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배수펌프장]

**빙압**

물이 얼거나 얼음 온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부피 증가로 인한 압력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사련**
(砂漣, sand ripple)

파랑으로 인해 바다 혹은 하천변에 형성되는 모래 언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사면재해**

호우시 자연사면의 불안정이나 인공사면의 시공불량 및 시설정비 미비,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경사지(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붕괴 및 낙석에 의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사방댐**
(沙防dam)

유역의 상류지역 또는 단지개발에 따른 토사유입 예상지역에 시공하여 유송된 모래와 자갈 등을 저류 또는 조절하는 댐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사방사업법]

**사석보호공**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이 닿는 제방사면이나 저면에 물의 흐름이나 파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사면 표면에 큰 돌을 쌓는 공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사수역**

하도에서 흐름이 없거나 흐름이 있어도 와류가 발생하여 유수의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사수위**
(死水位, dead storage level)

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저수 기능이 상실되는 상한 표고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상시만수위, 저수위,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산업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사이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면 높이가 다른 유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역 U자형 관을 말한다.

**사주**
(砂州, sand bar)

하천 및 연안에 유사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퇴적지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교호사주, 복렬사주]

**사통**
(斜桶, inclined conduit)

관로를 경사지게 설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취수공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사행하천**

하도가 곡선을 이루는 하천으로서 상류산지에서 생산되어 유송되는 토사가 흐름의 소류력에 의해 세굴 및 퇴적현상을 반복하여 홍수가 있을 때마다 하천양상이 변모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유의어 : 곡류하천]

**사후환경 영향조사**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산기장치**
(散氣裝置)

미생물 호흡을 위한 산소농도 유지, 침전물 부유 상태 유지 등 여러 목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산업용수**

기업이 원수 등 범용적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용도에 맞게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용수를 말한다.

**산업용수 공급 및 시설 운영업**

산업용수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관련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폐수**

공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사용되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산업표준화**

광공업품의 규격 및 그 생산과정의 여러 요인을 통일·단순화하기 위하여 만든 기준을 말한다.

**산화구**
(酸化溝, oxidation ditch)

일차침전지를 설치하지 않고 타원형 무한수로의 반응조를 이용하여 기계식 포기장치에 의해 포기를 행하며, 2차침전지에서 고액분리가 이루어지는 저부하형 활성슬러지 공법을 말한다.

**살수** (撒水, sprinkling)

관개, 먼지 방지 등의 목적으로 물 등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살수여상법**
(撒水濾床法, percolating filter method)

쇄석 등을 쌓아올린 여과제 사이로 오수를 흘려 오수 중의 유기물이 생물막과 접촉하여 산화분해되도록 하는 살수처리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살수용수**

조경용수, 비산먼지 방지 및 도로노면 청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살수차**

도로 또는 운동장 등의 장소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차량을 말한다.

**상수관로**

수돗물의 도수, 송수, 배수, 급수 등에 사용되는 상수도 관로를 말한다.

[유의어 : 수도관]

**상수도**

하수도에 상대되는 용어로 식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수도]

**상수도 누수량**

상수도관에서 생기는 손실수량을 말한다.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의 세척 및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 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상수도보급률**

총 인구 중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급수인구/총인구)을 말한다.

[유의어 : 수도보급률]

**상수원**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상수원 관리지역**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유의어 : 상수원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수질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상수원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취수하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원수]

**상수원호소**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에 따른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상습가뭄 재해지구**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습가뭄 재해지역**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로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상습침수지역**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상시만수위**
(normal high water level)

댐에서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의어 : 만수위]
[연관어 : 사수위, 저수위,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상시저류시설**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 시에는 저류지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연못, 호수, 저수지 등)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우수저류시설, 일시저류시설]

**상시하천**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연관어 : 간헐하천]

**상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색도**

물속에 포함된 용해성 물질 및 콜로이드성 물질에 의한 물의 색에 적용하는 척도를 말한다.

**샘물**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층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유의어 : 천수]

**샘물보전구역**

시·도지사가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샛강**

큰 강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갈려 나가 중간에 섬을 이루고, 하류에 가서는 다시 본래의 큰 강에 합쳐지는 강을 말한다.

**생공용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말한다.

**생물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생물 또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물농축**

어떤 원소나 물질이 생물의 체내에 들어오면 분해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먹이 연쇄를 따라 이동하여 생물체내에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물다양성**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유의어 : 생물종 다양성, 종 다양성]

**생물막**

수중의 유기물을 기질로 하여 담체에 부착생장하는 생물군집체를 말한다.

**생물막여과법**

1980년대 유럽에서 개발된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공정 중 하나로서 여재에 미생물을 성장시키고 하수를 흘려보내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하수처리법을 말한다.

**생물서식처**

생물의 서식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본단위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며, 그들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환경 조건을 포함한다.

[유의어 : 서식처]

**생물여과**

표면에 생물막이 부착된 완속여과지의 모래층으로 물을 통과시킴으로써 용존 유기물의 제거와 부유물질 여과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물자원**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BOD]

**생수**

샘에서 솟아 나오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생애주기비용**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생찌꺼기**

1차 침전지에서 독립 침강 형태로 침전되는 찌꺼기를 말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 부담금**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공원**

자연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생태관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유의어 : 자연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지역**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독성**

특정 종류의 생물적 또는 화학적 요인이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 구성 생물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태마을**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을 말한다.

**생태면적**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면적률**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복원**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훼손된 중요한 서식처나 생물종을 훼손 이전 상태나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생태용수**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 및 생태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생태축**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설치·관리자**

자연환경보전법서 정한 바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하천**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생태하천복원**

하천 내외의 인공적인 생태계 교란 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관리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정비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태환경**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 전이보전구역**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또는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생하수**

처리가 되지 않은 하수로 공장이나 가정 등에서 발생된 처리되지 않은 순수 하수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생활오수**

화장실, 부엌, 목욕탕, 세탁 등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말한다.

**생활용수**

수세변소, 목욕, 세탁, 청소, 음용, 살수, 자동차 세정 등 생활에서 이용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활하수**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을 말하며, 음식물 찌꺼기와 식용유, 세제 등이 주요 오염물질로 포함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생활환경**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서식수변 환경지수**
(habitat and riparian index; HRI)

하천의 지형과 물리적 특성 및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 한 기준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서식처**

생물의 서식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본단위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며, 그들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환경 조건을 포함한다.

[유의어 : 생물서식처]

**선행강우**

현재의 강우보다 이전에 발생한 강우를 말한다.

**설계갈수량**

하천에서 취수 및 저수관리, 저수로 유지관리, 하천 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정한 갈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설계강우량**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설계빈도와 함께 제시되는 강우량을 말한다

**설계빈도**

수리 구조물 설계 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확률·통계적으로 산출한 수문량의 발생빈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설계용수량**

관개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의 시설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 용수량을 말한다.

**설계유량**

치수 또는 이수의 목적에 따라 계획한 유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설계유속**

수로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유속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설계조위**

항만, 해안구조물 또는 감조하천 구간의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설계에 이용되는 조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설계홍수량**

수문통계 및 홍수특성, 홍수빈도, 그리고 홍수피해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공구조물(하도, 방수로 등)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첨두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설계홍수 수문곡선**

수공구조물 설계의 기준이 되는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시에 예상되는 수문곡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설계홍수위**

수공구조물 설계의 기준이 되는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위의 최고값으로서 하천제방 등의 설계에 사용된다.

**세계물포럼**
(World Water Forum)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가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말한다.

**세굴** (scour)

파랑 또는 하천흐름에 의해 수로 및 연안의 바닥이나 제방사면이 침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국부세굴, 수축세굴, 압력세굴]

**세굴공**
(洗掘孔 scour hole)

세굴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수로바닥이 움푹 파여진 공간을 말한다.

**세굴방지**

호안, 하상보호공, 강널말뚝, 섶침상 강널말뚝 등의 방법으로 수로바닥의 세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굴보호공**

교량의 교대 또는 교각주변으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 또는 하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세굴심**

기존하상을 기준으로 세굴로 인해 침식된 깊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소** (沼, pool)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 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웅덩이] [연관어 : 여울]

**소권역**

「물환경보전법」 상의 수계영향권 구분에 따른 소규모 권역을 말하며,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연관어 :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소권역별로 수립하는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하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소독능**

미생물을 적절히 사멸(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소류력**

흐르는 물에 의하여 수로면에 작용하는 단위면적 당 전단력을 말한다.

**소류사**

하천이 운반하는 토사 중 하상에서 구르거나 도약해서 운반되는 토사를 말한다.

[연관어 : 부유사]

**소류사량**

단위시간 당 하천단면을 통과하는 소류사의 양을 말한다.

**소류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평지를 땅을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소규모의 저수시설을 말한다.

**소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 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소수성 막**
(疏水性膜, hydrophobic membrane)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의 소재로 제조된 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소유역**

유역이 큰 경우에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류별로 또는 일정한 유하 시간별로 유역을 작게 나눌 때 나누어진 작은 면적의 유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연관어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관리위원회**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시설**

소하천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 호안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함),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점용**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에서 행하는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또는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의 경우는 제외)을 받아야 하는, 소하천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소화조**

고농도 유기물 및 하·폐수 찌꺼기 등의 최종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조를 말한다.

**소화찌꺼기**
(digestion sludge)

오물, 오수를 소화 처리했을 때 생기는 찌꺼기로서 소화조 하부에 침전하여 농축되는 것을 말한다.

**송수**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을 관로를 통해 배수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송수관 (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관로를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송수시설**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송수하는 시설로서 송수관, 송수펌프, 조정지 및 밸브 등의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수격압**

관로 안의 물의 운동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수격작용으로 인하여 관로에 발생하는 상승압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격작용**
(water hammer)

밸브의 급격한 개폐 등에 의하여 관 내의 유속이 급변함에 따라 수압이 급격히 변하여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음을 수반하는 현상을 말한다.

**수경시설**
(水景施設, landscaped facilities)

분수, 호수, 인공폭포, 벽천, 생태연못 등과 같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계**

본류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연관어 : 하천수계]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계관리위원회**

해당 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계망**

유역 내 하천의 분포상태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하천망]

**수계영향권**

하천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수계주민지원 사업계획**

해당 수계관리청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수계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말하며,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관교**
(水管橋, water pipe bridge)

관이 하천, 수로 또는 계곡을 횡단할 때 가설되는 교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도**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유의어 : 상수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스마트 미터를 활용하여 수도 소비량 및 미터 기기의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의 측정·전송·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스마트 미터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방식 및 인프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말한다.

**수도공사**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도관**

수돗물의 도수, 송수, 배수, 급수 등에 사용되는 상수도 관로를 말한다.

[유의어 : 상수관로]

**수도법**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도보급률**

총 인구 중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급수인구/총인구)을 말한다.

[유의어 : 상수도보급률]

**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도시설**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도시설관리권**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도요금**

수돗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유의어 : 상수도요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돗물 음용률**

수돗물 공급지역 내에서 수돗물을 바로 받아 마시는 직접 음용하는 사람과 끓여 마시는 등의 간접 음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두손실**

마찰손실(관벽에서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과 각종 미소손실(단면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 부분이나 곡관부 등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합한 값으로,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로 인해 에너지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량측정기기 및 장치 제조업**

수량 측정용 기계식, 전자식, 초음파식 유량계, 적산유량계 및 유량측정용 위어, 벤튜리 플륨, 파샬 플륨, 크리티컬 플로미터 등과 유량 및 수위를 자동측정 및 조절하는 기기·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력댐**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댐을 말한다.

[유의어 : 발전(용)댐, 수력발전댐]

**수력발전**

수로를 통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수력발전댐**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하나인 댐을 말한다.

[유의어 : 수력댐, 수력발전소댐]

**수로**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말하며, 상수관로나 하수관로와 같은 인공수로와 하천과 같은 자연수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로교**

계곡이나 저지대 등을 수로가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교량을 말한다.

**수로터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건설된 터널을 말한다.

**수리구조물**

물을 이용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수리권**
(水利權)

하천수를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수리권자**

하천수를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한다.

**수리답률**

전체 논 면적중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에 의해 용수를 공급받는 논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리모형실험**

물의 흐름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형과 유사한 물리적 모형을 제작하여 수행하는 실험을 말한다.

**수리시설**

물의 이용을 위하여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들을 말한다.

**수리전도도**

단위시간 동안 단위단면적의 흙이나 암석 사이를 침투하는 물의 유출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투수계수]

**수리조정**
(水利調整)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수리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학적 홍수추적**

하천 등 개수로에서의 부정류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홍수시 유량과 수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막재배**
(水幕栽培)

지하수가 풍부한 재배지역에서 겨울철 하우스 보온방법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위에 살수하여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이는 작물재배법을 말한다.

**수면관리자**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몰 이주민**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를 말한다.

[출처 : 댐건설법]

**수문**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문곡선**

하천 등 물이 흐르는 지점에서 수위과 유량 등 수문량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수문관측**

강수량, 증발량, 하천유량, 수위 등의 수문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관측을 말한다.

[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수문기상가뭄 정보시스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비, 구름, 눈 등)에 관한 정보와 기상상태가 원인이 되는 가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수문설계**

수자원 시스템에 수문사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이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배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준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수문학적 설계]

**수문순환**

강수로부터 지표수와 지하수로, 저류와 유출로, 또한 증산과 증발작용에 의해 결국 대기중으로 되돌아가는 지구상의 물의 연속적인 순환 이동과정을 말한다.

[유의어 : 물순환]

**수문자료**

강수량, 수위, 유량, 증발량 등의 수문순환 요소들을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

**수문자료 공인 심의위원회**

공인 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수문자료 자체평가**

공인신청기관 장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 및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수문자료 자체평가위원회**

수문자료의 공인 신청기관에서 공인신청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처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수문자료 품질관리**

수문조사 주기에 따라 수집된 수문자료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신뢰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관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

수문자료 품질관리 업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문자료의 공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산된 수문자료를 환경부장관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실시간으로 전송된 관측 수문자료, 관측기기에 장착된 기록지 및 데이터로거 자료, 수문조사 종사자에 의한 보통관측자료 및 현장 측정자료(유량, 유사량 등)에 대해 각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과 자료 수집 저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수문조사**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 포함), 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문조사기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문조사기기**

수문조사기관에서 수문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문조사 기본계획**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현황분석,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문조사시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 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작성·비치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한다.

[출처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 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문조사시설의 이중화**

홍수예보 등 하천관리가 중요한 지점에는 결측 및 오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측정계기, 전송장비, 저장매체, 전원시설 등을 이중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 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수문조사시설의 코드관리**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 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수문조사연보**

우리나라 수자원분야 연구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토개발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련 기관에서 관측한 수문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을 말하며, 강수량편, 수위편 및 유량편으로 구분된다.

**수문지질도**

지하수의 분포 형태, 수질 조건 등 지하수의 외적, 내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호, 색채, 등치선 등을 통해 도면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수문학적 가뭄**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하천수, 지하수 및 저수지 등에서 물공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수문학적 설계**

어떤 수자원 시스템에 수문사상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이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배하는 주요변수들의 기준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수문설계]

**수문학적 홍수추적**

연속방정식과 저류량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홍수시 유량의 시간적 변화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방**

홍수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수방기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수방시설**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수변/수변공간**

수역(물길), 수제역(물가), 육역(홍수터 및 제방)으로 이루어진 하천구역으로 경관생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선형의 하천 회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하천구역]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에 관하여 5년마다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하며,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변구역/ 수변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주변에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 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말한다.

**수변생태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변생태벨트**

수변녹지의 기본 기능에 생물부양 및 생물 이동통로 기능이 덧붙여진(생태적 연결성 개념을 추가한), 수변녹지의 확장된 개념을 말한다.

[출처 : 수변생태벨트 조성관리 지침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환경부장관이 한강, 금강, 낙동강 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조성 기간 및 일정,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변습지**

하천, 호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습한 지역을 말한다.

**수변완충지대**

수역과 육역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하도를 따라 선형으로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서 토양, 동식물 등 생태시스템을 이루는 자연공간을 말한다.

**수변토지**

하천, 호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수상** (水象)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출처 : 기상법]

**수상태양광**

호수, 저수지, 댐, 연못 등의 수면 위 플로팅 장치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말한다.

**수생생태계**

물속의 생물집단과 이 집단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생태환경이 포함된 복합 체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수생태계]

**수생식물 정화법**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호소 등의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생태계**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유의어 : 수생생태계]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을 생태계로 인식하고 생태계 본연의 기능회복을 목표로 하천복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등의 항목들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생태계 복원**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수생태계 복원계획**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시행하는 복원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서식지**

생물의 서식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본단위로서 생물의 먹이섭취, 휴식, 피난, 산란을 도우며, 하상의 형태, 물의 흐름 및 하안 형상과 매우 관련이 깊다.

**수생태계 연속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현황조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전국적인(환경부장관) 또는 관할구역의(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현황조사계획**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조사계획으로서  조사 시기, 조사 지점, 조사 항목을 포함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소이온농도지수** (pH)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용액 중에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수역**

하천, 저수지 등 물이 점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조성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말한다.

**수열냉난방**

수온이 여름에는 대기(공기)보다 5℃ 정도 낮고 겨울에는 10℃ 정도 높은, 물과 대기의 온도 차를 이용한 여름철의 냉방 및 겨울철의 난방을 말한다.

[유의어 : 수열에너지냉난방]

**수열에너지**

해수, 하천수, 지하수 등 물이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말한다.

**수운**

하천, 호수 등에서 선박을 통해 여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의어 : 주운]

**수원**

물의 공급원을 말한다. 하천이 발원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위**

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하천, 저수지 등의 수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위-유량곡선**

동일지점, 동일시점에서의 관측수위와 관측유량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결정한 수위와 유량간의 관계곡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위표**

하천, 저수지 등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눈금을 표시해 놓은 측정표척을 말한다.

**수자원**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뜻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수자원 부족량**

수자원 이용량과 공급 가능한 수자원 양의 차를 말한다.

**수자원 부존량**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구한 수자원 총량에 유출률을 곱한,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자원 이용량**

생활용수(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 미급수지역 수요량, 기타 지하수이용량), 공업용수(기존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량, 계획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량), 농업용수(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유지용수(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의 총량을 말한다.

**수자원 정보체계**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 총량**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은 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자원개발**

이수나 치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댐이나 하천 등을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자원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총칭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관리**

수량, 수질, 하천, 댐 및 호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물관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자원관리기술**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관리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수자원단위지도**

국가 차원의 수자원개발, 계획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의 수집, 분석과 물관련 기관 간 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지형공간 상에 대권역, 중권역 및 표준유역의 가상의 구역을 설정한 지도를 말한다.

[연관어 : 공통유역도]

**수자원시설**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댐, 보,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앞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위성**

365일 주야 및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홍수 및 가뭄 등 수자원/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광역적 국토 및 수자원관련인자를 관측하고 산출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위성을 말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전문 청소 및 정화업**

하천, 댐, 호소 등의 부유물질 등을 수거·처리 및 청소하거나 정화 및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재해**

홍수, 가뭄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재해를 말한다.

**수제(공)**

하안보호 및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고 생태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제선**

모래사장과 특정 수면이 접하는 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조**

물을 담는 큰 통을 말한다.

[유의어 : 물탱크]

**수질**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감시항목**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먹는 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수질개선부담금**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수질개선 사업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가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수질경보시스템**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기준**

물의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인 기준으로 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오염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질기준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 기준), 수질규제 기준(배출허용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항목을 말한다.

**수질모니터링**

하천, 저수지 등 수체의 수질을 검사하여 그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분석**

물에 들어 있는 성분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질사고/ 수질오염사고**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수체가 단시간에 극심히 오염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질예보**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수질오염**

하천, 호소, 지하수, 바다 등의 물이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 경보제**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방제센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해야 하는 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방제정보시스템**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제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방지시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원**

수체의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의어 :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제]

**수질원격감시 체계 관제센터**

환경부장관이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하는 관제센터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지수**
(water quality index, WQI)

수질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반 국민 혹은 정책결정권자들이 하천의 수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천수질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수질상태를 점수화 한 것을 말한다.

**수질총량정보 시스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질환경기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등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수질 기준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차**

하천 또는 저수지 등에 설치하여 흐르는 물이 가지는 있는 위치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수력발전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기를 말한다.

[유의어 : 터빈]

**수처리시설**

오염되거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처리시스템**

생공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거쳐 수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처리용 공기 공급시설 제조업**

산기관, 송풍기, 수중폭기기 등을 포함하여 수처리 및 호소의 수질관리 과정에서 산소공급 혹은 폭기, 교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기공급시설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물리적 여과장치 제조업**

물리적 수처리 공정에서 부유물 등을 처리하는 여과장치와 부속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방수 방식제 제조업**

물산업용 제품 및 시설의 방수처리를 위해 방수 방식제(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분리막 제조업**

수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분리막, 모듈 및 멤브레인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살균, 소독장치 제조업**

수처리용 살균·소독에 필요한 자외선, 오존처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살균 소독제 제조업**

원형동물 등 수중 미생물을 살균·소독하는 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소독약품 주입기 제조업**

수처리용 염소 등 소독약품을 주입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응집제 제조업**

수처리 공정에서 물속에 현탁·분산하고 있는 미세입자나 콜로이드 입자를 결합시키는 응집제·응집보조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 및 순수 제조장치 제조업**

고도 정수처리 및 순수(부유물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 생산에 필요한 이온교환수지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일반필터 제조업**

수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일반필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폐하 (PH) 조정제 제조업**

수처리 공정에서 필요한 페하(PH, 수소이온 농도지수) 조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화학기계 제조업**

화학적 수처리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기계(교반기, 감속기, 혼화기, 농축기, 분리기, 건조기 등)와 부속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용 활성탄 제조업**

수처리 공정에서 필요한 활성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처리제**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수축세굴**

하천의 흐름 단면적이 자연 또는 인공적인 요인에 의하여 감소되어 통수단면이 수축되고 따라서 이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제방이나 하상 재료의 이동량이 상부로부터의 유입량보다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압력세굴, 국부세굴]

**수충부**

단면의 축소부 또는 만곡부의 바깥 제방과 같이 흐름에 의해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치지형도**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값을 종합 및 분석하여 지표면 상의 위치, 지명, 지형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맞게 문자, 기호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상에서 분석 또는 편집,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지형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지표면 위의 모든 인공구조물과 나무, 식생들이 제거된 맨 땅의 높이를 격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연관어 : 수치표면모델]

**수치표면모델**
(digital surface model; DSM)

지표면에 인공구조물과 나무, 식생들이 포함된 높이를 격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연관어 : 수치표고모델]

**수탁처리폐수**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수퍼제방**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 하천의 특정 구간에 설치하는, 폭이 상당히 넓은 대규격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수평방사형집수정**
(水平放射形集水井)

지하수면 아래 관정의 측벽에서 수평 방사상으로 다수의 집수관을 설치한 우물을 말한다.

[유의어 : 방사상 집수정]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관개면적을 말한다.

[출처 : 농어촌정비법]

**수환경변화사고**

유류, 농약, 유독물 등 화학제품, 중금속·폐유기용제 등 악성 폐수 및 폐기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사고를 말한다.

**순간단위도**

지속기간이 영에 가깝게 순간적으로 발생한 유효우량에 따른 유출 수문곡선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순물소모량**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이수에 의한 물소모량에서 자연 식생 상태하의 물소모량을 뺀 값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순환관개**

간단관개의 일종으로 수개의 지구로 나누어진 관개지역을 돌아가면서 관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순환수**

십자흐름 여과방식에서, 막 모듈로부터 나온 농축수 중 공급수 측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순환이용**

사용된 물을 재처리하여 이용하는 행위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스마트 물관리**
(smart water management)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물관리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스마트 물재이용**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 미터**

시간대별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식 유량계를 말한다.

**스마트 미터링**
(smart metering)

물사용량을 원격 계측하여 수량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물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스마트 워터그리드**
(smart water grid)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ICT를 도입하는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으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전 분야에서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스마트 워터시티**
(smart water city)

취수원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체 공급과정에 ICT를 접목시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체계가 구현된 물의 도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스마트 정수장**

기존 사람이 분석·판단해서 운영하는 정수장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 에너지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설비 예지보전, 정수장 자율설비운영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스컴**
(scum)

정수처리 또는 하수처리 공정에서 침전지 상부, 즉 표층부에 쌓이는 찌꺼기를 말한다.

[연관어 : 부유물, 부유물질]

**스크린** (screen)

1) 하수 중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후속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여 하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관정을 개발할 때 지하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큰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스톡홀름 국제물주간** (SIWI World Water Week)

지속가능한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물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가 주최,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물 관련 국제행사를 말한다.

**슬러리** (slurry)

고농도의 현탁 물질을 함유한 유동성이 적은 액체 상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슬러지** (sludge)

하수처리과정에서 수중의 부유물이 중력 작용에 의하여 물로부터 분리되어 침전지의 바닥에 침전한 고형물을 말한다.

[유의어 : 찌꺼기, 오니]

**습도**

대기 중의 수증기 함유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습식산화법** (濕式酸化法, wet oxidation process)

물속에 존재하는 용존 및 부유 유기물질을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습지**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유의어 : 늪, 늪지]

**습지개선지역**

습지 중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또는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해당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 기본계획**

습지보전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 기초계획**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하는 기초계획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이용시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또는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의 훼손**

배수,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조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습지주변 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말하며,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시간 급수**

급수 시간을 제한하여 공급하는 급수제한 방법을 말한다.

[연관어 : 급수제한, 감압 급수]

**시간제급수**

가뭄이나 재난, 전쟁 등으로 물이 부족하게 될 경우 특정 시간에만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시료채취**

측정이나 분석 등을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시설물안전법]

**시험유역**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강수량 등의 수문량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측함으로써 수문조사와 수문분석에 대하여 정량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된 표본유역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실험유역]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댐 정비사업시행계획,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식생수로**

식생으로 덮힌 개수로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이송시키는 시설로 식생에 의한 여과, 토양으로의 침투 등의 기작으로 강우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연관어 : 식생형 시설]

**식생여과대**

잔디 또는 초본을 식재한 식생대를 말하며, 강우시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연관어 : 식생형 시설]

**식생피복**

경사지와 같이 침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식생을 심어 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토양피복]

**식생형 시설**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하며,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출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관어 :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식수전용댐**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댐을 말한다.

**식종찌꺼기**

생물반응조를 비우고 다시 미생물을 식종할 때 타 하수처리장의 찌꺼기를 수송하여 식종하는데, 이러한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신기술인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하천**

홍수 소통단면을 증대하거나 홍수량을 전환하여 소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되는 새로운 하천으로, 주로 첩수로, 방수로 또는 분수로로 구분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신제품인증**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개천**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폭이 매우 작고 수심이 낮은 개울을 말한다.

[유의어 : 개울, 도랑]

**실양정**
(實揚程, actual pump head)

물이 펌프로 흡입되는 수면과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수면과의 표고차를 말한다.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갖는 지배권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실용신안법]

**실증플랜트**

어떤 기술의 실용성을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 위한 실험 장비나 시설을 말한다.

**실증화**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최적화·주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심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 또는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지표로 솟아 나오는 물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연관어 : 천층지하수, 표층지하수]

**심층포기법**

수심이 깊은 반응조를 이용하여 용지이용률을 높이고자 고안된 포기공법을 말한다.

**십자흐름형 여과방식**

원수를 여과막 표면과 평행하게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게 하여 막 표면에 불순물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여과 방법을 말한다.

**싱크홀**
(sinkhole)

석회암 등 퇴적암이 많은 지역에서 지하에서의 함몰, 암석용해 등으로 자연적으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아시아 국제물주간**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AIWW)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물회의를 말한다.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Asia National Assembly Water Consultative Board; AAWC)

2019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물 정책 플랫폼으로서 각국의 물 관련 입법 및 정책 우수사례 공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현역 국회의원간 국제협의기구를 말한다.

**아시아 물위원회**
(Asia Water Council; AWC)

아시아 물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물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역내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 물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아시아 대표 물협력 플랫폼을 말하며, 아시아 물이슈 아젠다를 개발하고, 워터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아시아 국제물주간을 개최한다.

**안정하도**

하천이나 수로가 장기간에 걸쳐 세굴과 퇴적을 반복한 후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바닥면의 토사공급과 토사 유송율이 같아져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하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안정하상**

임의의 하도구간 내에서 유사의 유입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어 하상세굴이나 퇴적의 경년변화가 거의 없는, 평형하천에서의 하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평형하상]

**안정화지**

하수 또는 폐수 중의 부유성 유기물의 침전효과와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효과를 기대하여 장기간 폐수를 체류시켜 자연적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연못을 말한다.

[유의어 : 라군(Lagoon)]

**알칼리도**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척도를 탄산칼슘 형태로 환산하여 mg/l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암거**
(暗渠, culvert)

용수나 배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철도, 제방 등의 밑에 매설된 짧은 수로를 말한다. 상부가 개방되지 않는,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시설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거배수**

땅 속에 암거를 매설하여 토양 내의 과잉수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암반지하수**

지하 심부의 암석에 함유되어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압력세굴**

교량이나 구조물이 물에 잠기는 경우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유속 및 압력변화가 발생하여 세굴심도 증가하는데 이때의 세굴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국부세굴, 수축세굴]

**액비**
(液肥, liquid fertilizer)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비살포지**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상화**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충격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야간최소유량**

사용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측정된 시간당 최소 수돗물 평균 유입유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누수량이고 소량의 사용량이 포함된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간략하게 하여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약품세정**

물리 세정만으로는 막 여과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약품을 사용하여 행하는 막의 화학적인 세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약품침전**

가만히 놓아두어도 가라앉지 않는 콜로이드상 물질이나 색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를 물에 가해서 침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응집침전]

**양배수장**
(楊排水場)

강이나 하천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 관개를 할 수 없을 경우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양수장)과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지역에 물을 배수하는 시설(배수장)이 동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양분관리제**

농경지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 투입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양분수지를 균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분관리 수단을 말한다.

**양수량**

펌프를 이용하여 단위시간에 퍼올리는 물(대수층 지하수)의 부피를 말한다.

**양수설비**

낮은 지대의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양수시설**

지표 아래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수중펌프(흡입식 펌프 포함) 등의 설비를 말한다.

**양수시험**

대수성시험의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양수를 하면서 대수층에서의 수위변화를 관측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을 말한다.

**양수영향추**
(cone of depression)

관정의 양수로 인해 관정주위의 지하수의 수위가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양수장**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시설 또는 강이나 하천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 관개를 할 수 없을 경우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수정**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해 설치된 관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양정**
(揚程, pump-up head)

펌프로 양수할 경우, 각종 손실을 고려한 퍼 올림 높이를 말하며, 펌프의 마력 및 전력계산시 사용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어도**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갑문식 어도, 계단식 어도]

**어류평가지수**
(fish assessment index; FAI)

서식하는 어류의 풍부도(총개체수), 서식환경변화 반응 종수(여울성 종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 개체수 등을 하천차수(1~7차)에 따라 매트릭화(배점표)하여 계산하는 지표를 말한다.

**어스댐**

흙으로 쌓아 올린 댐을 말하며, 콘크리트 댐에 비하여 바닥이 약한 곳에 건설된다.

[유의어 : 흙댐]

**여과**

다공질의 막이나 층을 사용하여 고체를 포함하는 유입수 중 액체만을 통과시켜 고체를 액체에서 분리하는 조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여과기**

여과를 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처리하는 원액의 고체농도에 따라 청정여과기와 케이크여과기로 구분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여과재**

여과에 사용되는 모래, 자갈, 활성탄 등의 재료를 말한다.

[유의어 : 여재]

**여과조**

고형물을 포함하는 유입수증 액체만을 통과 시키기위한 위한 시설을 말한다.

[연관어 : 여과기, 여과지]

**여과지**
(濾過池)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생산과정의 하나로 침전지에서 없애지 못한 아주 작은 응집물 등을 두꺼운 모래층을 통과시켜 제거시키는 곳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여상**

물처리 시설의 하나로서 모래, 자갈, 부순물 등의 거름층을 가진 콘크리트제 수조를 말하며, 살수여상이나 여과지의 여재를 쌓아올린 부분을 말한다.

[출처 : 환경공학용어사전]

**여수로**
(餘水路, spillway)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 또는 전환댐에서 전환계통의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여수처리**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여울**
(riffle)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소]

**여울마자**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며 낙동강 수계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을 말한다.

**여유고**

제방의 설계 시 제방의 높이를 계획 고수위보다 높게 여유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높이 차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역류방지기구**

배수관(排水管)이나 급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를 말한다.

**역사이펀 (관)**
(inversed siphon)

수도관이나 배수관이 하천이나 지장물을 횡단해야 할 경우에 그 아래에 설치하는 U자 형태의 관을 말한다.

[유의어 : 잠관]

**역삼투막**
(reverse osmosis membrane)

역삼투 원리를 이용하여 용매와 용질을 분리하는 막으로서 용매는 통과하지만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막을 말한다.

[유의어 : RO 막]

**역삼투법**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 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연관어 : 나노여과법, 정밀여과법, 한외여과법]

**역세척**

여과재의 세척을 위하여 고압의 여과수를 대량으로 여과의 역방향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여과재에 부착되었던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유의어 : 역세정]

**역조정지**
(逆調整地, reregulating reservoir)

조정에 의하여 생긴 발전소 방류량의 변동이 하류의 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류조정지의 조정작용의 결과를 역으로 조정하여 자연유량으로 환원시켜 방류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침전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간유출량/ 연유출량**

하천의 출구지점에서 1년 동안 유출된 유출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계운영**

수계 내 조절점을 기준으로 상류 댐의 수문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류량을 배분하여 최적의 댐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수**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광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소량 함유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단물]
[연관어 : 경수]

**연안**

육지와 바다, 하천, 호수 등과 접해 있는 육지부분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안습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연최대홍수량**

1년 동안의 하천유출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평균수위**

1년을 통하여 일평균수위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평균유량**

1년을 통하여 일평균유량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열섬효과**

도시화로 인해 기온이 주변 교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염소소독**

여과나 침전의 물처리를 실행한 뒤, 염소의 살균작용을 이용하여 무해화하는 조작을 말하며, 상수, 하수 처리에 사용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염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을 말한다.

[출처 : 습지보전법]
[연관어 : 담수]

**염수침입**

바닷물인 염수가 담수 대수층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염지하수**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염지하수 관리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연관어 : 4대강 수계법]

**영양염류**

인·질소 등 염류를 총칭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영업오수량**

사무실, 백화점, 학교, 병원, 식당 등(공장은 제외)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의 양을 말한다.

**영점(零點)표고 검정수준점**

기준수위표의 영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1등 수준점(불가피한 경우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2등 수준측량에 의하여 수위관측소 인근에 설치한 수위표 전용 수준점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영점표고**

특정 관측소에서 기준으로 채택한 기준표고를 말한다.

**예비방류**

홍수발생 전에 홍수조절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댐의 물을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 오니

오수 및 하수처리장등의 침전조에서 침전된 미생물 찌꺼기를 말한다. 하천, 댐, 저수지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미생물 및 흙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의어 : 찌꺼기, 슬러지]

## 오리피스

1) 어도의 격벽의 하단에 뚫어놓은 구멍(잠공)을 말한다.
2) 관수로 흐름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 오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연관어 : 하수]

## 오수관로

분류식 하수도에서 오수만을 수집하여 흘려 보내는 관로를 말한다.

[연관어 : 하수관로]

## 오수량원단위

오수량원단위는 오염원별 즉 생활오수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오수량등으로 구분되며 생활오수량 원단위, 공장폐수량 원단위, 관광오수량 원단위, 군부대 오수량 원단위, 지하수량 원단위는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 오수받이

분류식 또는 합류식의 각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가정오수를 공설하수관으로 보내는 도중에 설치하는 물받이를 말한다.

## 오수처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활용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시행령]

## 오수펌프

오수를 이송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펌프를 말한다.

**오염물질**

질소, 유기물, 난분해성 물질, 중금속, 미생물과 색도, 탁도와 냄새 등을 유발하는 물질 등과 같이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오염부하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오염원**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배출하는 곳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오염지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

[출처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지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하며,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을 포함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 제도**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염총량제]

**오염총량관리 지역**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목표 수질**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의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염할당사업자**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오존소독**

오존의 강한 산화력을 이용하여 물을 소독하거나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오탁방지막**

저수지 등에 퇴적된 오니의 준설, 사석 투하 등으로 인하여 수상 공사 중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막을 말한다.

**온배수**

발전소 내각수 등과 같이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온배수 재이용사업**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배수 재이용시설**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배수 재처리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천개발계획**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온천법]

**온천발전 종합계획**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온천법]

**온천법**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온천법]

**완경사 낙차공**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류측 경사를 1:10~1: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완경사 제방**

제체내 우수침투 및 제초 등의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소단(경사면의 중간에 설치하는 작은 계단)을 제거한 하나의 완만한 비탈면을 갖는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완성제방**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연관어 : 잠정제방, 계획제방]

**완속여과법**

모래층과 모래층 표면에 증식하는 미생물군에 의하여 수중의 부유물질이나 용해성물질 등의 불순물을 포착하여 산화하고 분해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정수방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완전굴입하도**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완충저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도록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외수범람**

하천수가 제내지로 넘어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외수위**

해안이나 하천 등에서 제방의 외측 수위, 즉 해수위나 하천수위를 말한다.

**용수 (전용)댐**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댐을 말한다.

[출처 : 댐관리규정]

**용수공급시설**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출처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용수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민법 제231조(공유하천 용수권) 및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로부터 파생되었다.

**용수로**

사용할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를 말한다.

**용적부하**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포기조의 단위 용적당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부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용존산소**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유의어 : DO]

**용천수**

피압 상태의 대수층에서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누출되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우량**

강우의 양을 단위면적당의 깊이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유의어 : 강우량]

**우량계**

강우량 측정에 사용하는 관측계기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우량관측소**

유역의 강수량의 관측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실시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관측지점을 말한다.

[출처 : 수문관측 업무규정]

**우량주상도**

강우량의 시간변화를 막대그래프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우물손실**

양수시 지하수가 스크린 등의 우물자재를 통과하거나 관정내부에서의 이동시 마찰 발생 등으로 관정내부에서 수위강하가 일어나 관정내부와 외부의 지하수위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우물회복법**

우물 자재 또는 근처 대수층의 지하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고압수 살수, 가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착물 제거 등을 통하여 지하수 산출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우수관 (로)**

분류식 하수도에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우수량**

우수관에 유입되는 강수량을 말한다.

**우수받이**

도로내 우수를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도로 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한다.

[유의어 : 빗물받이]

**우수배수체계**

강우시 빗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체계로 우수관로와 배수구역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말한다.

**우수유출 저감대책**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본래의 유역이 가지고 있던 저류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첨두유출량 및 총 유출량을 저감시켜 하류하천에 홍수부담을 감소시키며 빗물의 재활용 등 수자원활용도를 높여 지하수함양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 유량확보 등을 통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

[연관어 : 우수저류시설, 우수침투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우수유출량**

일정시간 내린 강우량이 토지 등에 흡수되는 양을 제외하고 우수관거 및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말한다.

**우수저류**

빗물이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모아 두는 것을 말한다.

**우수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외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빗물저류시설]

[연관어 : 우수유출 저감시설, 일시저류시설, 상시저류시설, 지구 내 저류시설, 지구 외 저류시설]

**우수침투**

빗물이 지표유출에 의해 하천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우수 유출 억제 방법을 말하다.

[출처 : 물백과사전]

**우수침투시설**

지표면 아래로의 우수 침투를 활성화시키고 불포화층 내에서의 저류효과 및 첨두유출량의 감소와 총 유출량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도로침투관, 공극저류시설 등이 있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빗물침투시설]

[연관어 : 우수유출 저감시설, 침투시설]

**우수토실**

합류식 하수도에서 유량배분을 목적으로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많은 비가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따로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우회수로**

지형상의 여건이나  장애물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직선수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우회하도록 설치하는 수로를 말한다.

**운반급수**

비상급수 방법 중 하나로서 급수차, 급수탱크 탑재차에 의해 음용수를 운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비상급수]

**운하**

선박의 이동경로나 농지의 관개 및 배수 또는 용수를 목적으로 내륙지역에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원가연동가격제 모델**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격 검침장치**

수돗물 사용량 등을 원격측정 계량기에 의해 검침하는 장치를 말한다.

**원격 물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물관리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원격 운영·제어를 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과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격탐사** (remote sensing)
물체로부터 반사 또는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성분, 종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원수**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유의어 : 상수원수]

**원심농축기**
중력만으로는 침강농축하기 어려운 찌꺼기를 원심력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농축하는 기계식 농축시설을 말한다.

**원심탈수기**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통 내부에 공급된 찌꺼기를 원심력에 의하여 고액분리함으로써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월류**
하천, 저수지, 댐, 하수관거 및 침전지 등에서 있는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월류벽**
어도에서 물이 넘치는 벽을 말한다.
[유의어 : 물넘이]
[연관어 : 비월류벽]

**월류부하**
강우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우수토실이나 토구에서 미처리 상태로 유출되어 방류수역으로 월류되는 오염부하를 말한다.

**월류수**
강우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우수토실이나 토구에서 미처리 상태로 유출되어 방류수역으로 월류되는 물을 말한다.

**월류수심**
월류하는 물의 월류부 수심, 즉 월류되는 구조물의 정부와 수면과의 표고차를 말한다.

**월류식 여수로**
저수지나 댐에 의해 담수되어 있는 저류량이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남는 저류량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댐 구조물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관 여수로]

**월류제**

높이를 낮게 하여 어떤 수위 이상의 홍수를 월류하게 만든 제방으로 홍수조절용 저류지, 방수로 등의 유입부를 말한다.

**위성측위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GNSS]

**위어**
(weir)

취수 및 수력발전 등을 위한 수위조절을 목적으로 하천수로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유의어 : 월류구조물]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저수지·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유공관**
(有孔管, perforated drain pipe)

측면에 많은 구멍이 나 있으며, 구멍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 부직포나 토목 섬유로 싼 후 토양에 묻어 배수와 통기를 촉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직경 7~30 cm의 플라스틱 관을 말한다.

**유공정류벽**
(有孔整流壁, pored baffle wall)

침전지 내의 유선을 물의 흐르는 방향과 평행하게 균일하도록 조절하기 위해, 흐름에 직각으로 개구부를 설치한 벽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기물부하**

BOD로서 측정되고, 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의 1일당 부하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기성폐수**

유기물을 함유하는 폐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유기폐수]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구교육센터를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유달율**
(流達率, delivery ratio)

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의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달부하량**

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배출부하량) 이 공공수역의 자정작용, 조류성장 등 물질변화 과정을 거친 후 하천의 특정 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연관어 : 배출부하량]

**유달시간**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을 말한다.

[연관어 : 유입시간, 유하시간]

**유독물질**

1 mg/l 이하의 농도로 어류독성시험에서 반수를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유량**

하천의 횡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물의 부피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량변동계수**

하천 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연도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하상계수]

**유량수문곡선**

하천 등 물이 흐르는 지점에서 유량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유량지속곡선**

하천에서 1년 동안의 일유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수평축에 지속일수, 수직축에 유량을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량측정**

유속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로**

강수로부터 발생된 물이 모여 지표상의 자연경사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물이 모여서 흐르는 길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로공**
(流路工, channel work)

유로의 변경에 의한 난류방지 및 종단기울기의 규제에 의한 종방향 및 횡방향 침식을 방지하고 하상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로연장**

유역 출구에서 본류를 따라 유역 분수계까지 이르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유사**

하천이 운반하는 토사를 말하며, 물에 떠서 운반되는 부유사와 하상에서 이동하는 소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관어 : 부유사, 소류사]

**유사 전달률**

유역에서 침식되어 나오는 생산 토사량과 유역 하류의 한 출구 지점을 통과하는 유출 토사량의 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사량**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량과 부유사량으로 구분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유사이송**

하천 흐름에 의하여 유사가 하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수**

경사진 사면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수분리조**
(油水分離槽, oil separator)

하수 중에 들어있는 유분을 하수관로에 유입하기 전에 물과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물에서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기름분리탱크]

**유수성 종**

피라미, 돌마자, 밀어 등 물이 흐르는 환경을 선호하는 수생생물 종을 말한다.

**유수수량**
(有收水量, revenue water)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연관어 : 무수수량, 유효수량]

**유수역**
(流水域, lotic water zone)

물의 흐름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유수역**
(遊水域, retarding basin)

하천이나 호수변에 설치되어 홍수 유입량을 경감시키고, 오염 물질을 침전시켜 유입 오염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흐름이 정체된 공간을 말한다.

**유수율**
(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유수점용**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일정면적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소하천정비법]

[연관어 : 하천점용]

**유수지**

홍수 시 저지대의 우수를 일시 저류시키기 위한 시설물로 유입수를 일단 체류시켰다가 배출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심선**

하천의 각 단면마다 하상고가 가장 낮은 평면상의 지점들을 흐름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유역**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유의어 : 배수유역, 배수구역, 집수구역]

**유역 반응시간**

유역에 내리는 강우에 따라 첨두유량이 발생하는 시간적 특성이나 수리학적으로 유역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역경계**

유역의 경계를 말한다.

[유의어 : 분수계]

**유역경사**

유역 지표면의 경사를 말한다.

**유역관리**

유역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의 유량이나 침식, 퇴적 등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하천유역관리]

**유역도**

유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유역면적**

유역분수계로 이루어지는 폐곡선 내 평면상의 면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집수면적]

**유역물관리 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둔 위원회를 말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본법]

**유역저류시설**

유역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을 말한다.

**유역조사**

유역의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유역조사지침]

**유역통합관리**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홍수조절, 물이용 및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연관어 : 통합물관리, 통합수자원관리]

**유역특성**

유역의 크기, 형태, 경사, 지하수의 형성 능력 및 투수능, 호수 및 습지의 존재여부 그리고 지표면 이용 상태 등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역특성인자**

하천유역조사 시 기본현황 조사항목 중 하나를 말하며, 유역면적, 좌안면적, 우안면적, 유역둘레,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포함한다.

**유역평균고도**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유역표면의 평균적 높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역평균폭**

유역의 형상을 나타내는 특성 값으로서, 유역면적을 유로연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유역하수도**

수질환경기준이 정해진 하천 등 공공수계 유역이 둘이상의 지자체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시,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이 아닌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 정비권역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수립하는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유역형상**

하천유역에 대한 외형적 모양이나 지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역홍수방어**

유역 내 홍수의 범람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인수로**

어류를 어도의 입구로 유도하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인효율**

어류를 어도의 입구로 유도하는 효율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입부하량**

하천, 호수 등의 수체에 단위시간 당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유입수**

흘러들어가는 물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하천이나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물, 하수처리 시 침전지로 들어가는 물,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물 등이 포함된다.

**유입수로**

저수지에서 댐 조절부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입수문**

저류지나 저수지 등의 유입부에 설치하는 수문을 말한다.
[연관어 : 유달시간, 유하시간]

**유입시간**

빗물이 지상에 떨어진 순간부터 하수관 또는 하천 등 유로까지 도달하여 유입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유지용수**

하천으로 해수가 역류하지 않게 방지하거나 하천주변의 지하수위 유지,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경관유지 등 하천의 유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출**

1) 유역내 강수가 지표나 지하를 지나 유역 출구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하수구나 공장 등의 시설에서 배수구를 통해 흘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방류수]

**유출계수**

어느 지역의 유출량을 그 지역에 내린 강수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유출고**

유역에서 유출된 물의 총량(체적)을 유역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출수문곡선**

하천 특정지점에서의 단위시간당 유출량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유하거리**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유하시간**

하천이나 하수관에 유입된 물이 유역의 출구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연관어 : 유달시간, 유입시간]

**유하형 범람**

하천에서 범람한 홍수류가 하천을 따라서 유하하는 유형의 범람을 말한다.

[출처 :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지침]

**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유황**

하천 유량의 변동 상황으로 연중 일유량의 변화를 말한다.

**유효강우량/유효우량**

강우량에서 손실량을 제외한 것으로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강우량을 말한다.

[유의어 : 초과강우량]

**유효강우주상도**

유효강우량의 시간변화를 막대그래프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유효공극률**

토양이나 암석에 존재하는 공극 중 지하수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극의 부피를 암석 또는 토양 전체 부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효무수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및 부정사용량 등 사용상 유효하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을 말한다.

[유의어 : 무수수량]
[연관어 : 유수수량, 유효수량]

**유효수량**

총급수량(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한 수돗물) 중 적합하게 사용된 수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무수수량, 유수수량]

**유효저수용량**

저수위로부터 상시만수위까지의 용량으로 이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효흡입수두**

흡입실양정(펌프의 흡입하는 수면부터 토출하는 수면까지의 수직거리)과 흡입관 손실수두의 합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육갑문** (陸閘門)

제방을 관통하여 평상시에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홍수 시에는 문짝을 닫아 제방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육수** (陸水)

해수를 제외한 육지 표면이나 땅속에 존재하는 지하수나 담수와 같은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육역화**

하도 내 수역의 일부가 식생역으로 천이가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수생태계에서 육지생태계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융합특화기상정보**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를 의미한다.

[출처 : 기상법]

**음이온 계면 활성제**

물에 녹아 생기는 음이온이 수용액의 표면에 달라붙어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성질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

**음폐수** (飮廢水)

음식물쓰레기의 폐수라는 뜻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체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응집보조제**

응집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응집제와 함께 첨가하는 약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응집제**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큰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액체에 첨가하는 약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응집지**
(凝集池, coagulation basin)

물 속에 포함된 작은 고형 입자들의 침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응집침전**

물리화학적인 조작을 통해 용액의 미세입자들을 합체 성장시켜 침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약품침전]

**이동상**
(移動床, mobile bed)

하천과 수로에 발생하는 소류력과 하도 및 하상토의 특성 등의 조건에 따라 하천바닥의 형상이나 구조가 변화 가능한 하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고정상]

**이동시간차 방식 초음파유속계**

유체흐름 속에서 흐름방향과 흐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음파의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의 유속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이상가뭄**

평년강우량(약30년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강우량으로 인한 가뭄현상을 의미하며, 통상의 가뭄관리의 범위를 넘는 상황을 말한다.

**이상갈수**

해당 댐의 설계 기준인 이수안전도를 초과하는 가뭄상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이상호우**

평년강우량(약30년평균)에 비해 현저히 많은 강우량으로 통상의 홍수관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강우량을 말한다.

**이상홍수**

설계홍수 및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홍수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이수**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수요에 의하여 하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이수기능**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이수시설**

생활, 공업, 농업 용수 등 각종 용수의 수요에 따라 하천수 등을 배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이수안전도**

용수공급을 위한 댐 및 부속시설물 또는 하천시설물 등이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수공급의 안정성 정도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이수용량**

저수위로부터 상시만수위(비홍수기) 또는 제한수위(홍수기) 사이의 이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수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이수현황조사**

하천유역조사의 항목으로서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입어종**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착종 중 원래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수계로 이동된 종을 말한다.

**이취미 (원인)물질**
(異臭味 原因物質, taste and odor compound)

수돗물의 맛 또는 냄새가 날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인공강우**

강수이론을 활용하여 구름 속의 물방울들을 인공적으로 뭉치게 하여 비를 내리는 방법 또는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내리는 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인공계 물순환**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시설, 물 재이용시설 등 인간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설치한 물관리 시설을 따라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말한다.

[연관어 : 자연계 물순환]

**인공습지**

자연 상태의 습지가 가지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습지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인공함양**

대수층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거나 침투시켜 지하수량을 증진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일반물자 정부간 교역 지원**

우수한 우리 기업 상품 및 서비스(방산물자 제외)를 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우리 기업, 유관 기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간 거래 수주 지원 및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수도**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일반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일사량**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일시저류시설**

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출이 발생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우수저류시설, 상시저류시설]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하천수 허가량이 평균 100 ㎥/일 이하인 경우로서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를 말한다.

[출처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일유량**

주어진 날의 폐수총량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일차처리**

하수처리장의 전처리과정으로서 하수 중에 비교적 부피가 큰 부유물질, 고형 물질 및 현탁물질을 물리적 단위조작인 스크린, 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 침전지 및 부상조 등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평균수위**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간 수위의 합을 24로 나눈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일평균유량**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간 유량의 합을 24로 나눈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입상 여과층**
(粒狀 濾過層)

여과재 표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통과한 플록(물에 응집제를 혼합시켰을 때 형성되는 응집물)을 내부에서 걸러내기 위해 입자의 지름이 크고, 균등한 특정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말한다.

**입상활성탄**
(粒狀活性炭,
granular activated carbon)

분말활성탄보다 입경이 큰 활성탄을 말하며, 수처리에 있어 흡착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출처 : 물백과사전]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광학적 방법에 의해 주어진 두 시간간격 사이에 획득된 입자영상으로부터 입자들의 변위를 구하여 유체의 속도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유속계를 말한다.

**잉여찌꺼기**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에 의하여 생긴 찌꺼기(슬러지) 중에서 재이용되는 반송 찌꺼기(반송 슬러지)의 나머지 찌꺼기를 말하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진다. 과잉찌꺼기 라고도 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자기수위계**

하천, 저수지 등의 특정 지점에서의 수위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하는 기기를 말한다.

**자기우량계**

측정강우량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우량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과거에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것을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방재용 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자동드레인**

수질 이상 시 자동으로 밸브가 개방되어 오염된 수돗물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동배수설비**

배수관의 동파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 내에 압력차가 있으면 밸브 안의 마개가 닫혀있다가 압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마개가 열려 자동으로 배수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보**

하천 내외 또는 상하류 수위의 변화에 따라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보를 말한다.

**자동수문**

수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수문을 말한다.

**자연경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그 소속하에 두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계 물순환**

강우, 증발산, 지표면 유출, 지하침투, 저류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말한다.

[연관어 : 인공계 물순환]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출처 : 자연공원법]

**자연기반해법**
(nature-based solution; NBS)

수문학과 생태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통합과학인 생태수문학을 이용하며, 인프라 설계에 생태계 원리(물질순환, 에너지 흐름)와 생태계 구성요소(식물, 토양, 물, 동물 등)를 연계하는 생태적 설계기법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배수**

자연유하방식에 의해 내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연관어 : 강제배수]

**자연생태**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유량**

하천유역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인위적인 물 사용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자연유보지역**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유하량**

하천 및 수계현황 조사 시 사용되는 하천의 주요지표 중 하나로서, 용수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의 하천유량을 말한다.

**자연자산**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실시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정화**

환경매체내에서 자연적인 기작에 의해 오염물질의 농도, 질량, 독성, 이동성 혹은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제방**

범람원에서 하천을 따라 양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고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지침으로서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하천환경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물관리종합대책(국무총리실)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에 수립한 지침을 말한다.
[출처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이념과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하천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관계되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자연환경**

지하·지표(해양은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0년을 주기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 및 동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4개 용도지역 중의 하나를 말하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자연환경복원 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또는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대상지역 위치 및 현황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 사용 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정보망**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생태·자연도, 생물종정보 등을 전산화한 자연환경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

**자유면대수층**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불투수층과 지표 사이에 존재하는 대수층을 말한다.

[유의어 : 비피압대수층]
[연관어 : 피압대수층]

**자유수면**

물과 대기의 접촉면을 말한다.

**자유지하수면**

자유면대수층의 상부 경계에 나타나는 지하수면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잔류물**

어떠한 물질을 걸러 내거나 물리적, 화학처리를 하였을 때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잠공**
(潛孔)

어도의 격벽의 하단에 뚫어놓은 구멍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완성제방, 계획제방]

**잡배수**

가정에서의 배수 중에 분뇨와 주방에서의 배수를 뺀 모든 배수를 말하며, 목욕, 샤워, 세탁에 사용된 물을 포함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생활 잡배수]

**잡용수**

세차, 청소 등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장기예보**

특정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예보대상 기간이 11일 이상에서 3개월 이내의 미래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기후업무규정]

**장내용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중 세척수, 소부수, 약품용해용수 등 하수처리장에서 필요한 용수를 말한다.

[연관어 : 장외용수]

**장외용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중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을 말한다.

[연관어 : 장내용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이용수**

한번 사용했던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복구보조금**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위험 저수지**

저수지·댐 관리자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동 법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한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지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연관어 :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를 말하며,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및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구분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현기간**

특정규모 이상의 홍수, 가뭄 등의 수문기상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을 말한다.

[유의어 : 재현주기]

**저류**

흐르는 물이 특정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저류량**

어떤 시각에 제한된 공간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저류상수**

Clark 방법의 매개변수 중 계획홍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를 말한다.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저류용량**

용수를 생공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저수지의 일정 표고까지 저류시킬 수 있는 물의 총 제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저류지**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저서동물지수**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dex, BMI)

다슬기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담수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평가지수를 말하며, 담수생태계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저서생물**
(底棲生物, benthic organism)

하천이나 호소의 바닥 부분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하천이나 호소 등 담수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바닥을 생활터전으로 삼으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무척추 동물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저수구역**

계획홍수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저수량**
(低水量, minimum stream flow)

1년 동안 275 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연관어 : 갈수량, 평수량, 풍수량]

**저수량**
(貯水量, pondage)

댐, 저수지 등에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물의 양을 말한다.

**저수로**

하천에서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저수로 하안관리선**

저수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그어지는 선으로서 저수로 형상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저수로 평면형으로서, 고수부지의 이용현황,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작성된 저수로 관리차원의 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저수용량**

댐 등의 시설물이 어느 일정한 표고까지 저류시킬 수 있는 물의 총 체적을 말한다.

**저수용량곡선**

저수지의 수위로부터 저수량을 구하기 위한, 수위와 저수용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저수위**
(低水位, low water level)

1) 1년 동안 275일은 이보다 높은 하천수위를 말한다.
2)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에서 사용되는 가장 낮은 수위로서, 일반적으로 최저 취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연관어 : 갈수위, 평수위, 풍수위; 사수위, 상시만수위,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저수율**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총 저수용량에 대한 현재 저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수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효저수용량에 대한 저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저수조**

「수도법」에 규정하는 상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저수탱크]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한다.

**저수지**

물을 담아 두는 곳으로서 경우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도 포함하나 대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 농업용 저수지를 뜻하기도 한다.

**저수지추적**

표고별 저류량곡선, 표고별 유출량곡선, 저류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 수문곡선과 저수지의 초기 저수량으로부터 유입량 수문곡선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호안**
(低水護岸)

저수로에서 발생하는 난류와 둔치(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의 하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연관어 : 고수호안]

**저습지**

저지대의 습지를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유의어 : LID]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문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통해 강우유출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을 말한다.

[출처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유의어 : LID 기술요소]

**적산유량계**
(積算流量計)

어떤 기간 동안에 흐르는 물의 총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말한다.

**적설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린 눈, 싸락눈 등이 지면에 내려 쌓여있는 수직 깊이를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적수**
(赤水)

철관의 내면부식 등에 의해 용출된 철이 산화되어 수산화제2철, 산화제2철의 수화물이 되어 급수전에서 유출된 물이 황갈색이나 적갈색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적정양수량**

대수층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유발하지 않고 우물에서 계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지하수량을 말한다.

**적조**
(赤潮, red tide)

부영양화, 염분저하 등의 원인으로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여 바닷물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녹조]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전기전도도**

전기장을 가했을 때 물질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저항과는 역수를 취하고, 단위는 S(Siemens)/m 또는 1/m를 사용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전염소처리**

정수처리에서 초기공정으로 살균, 철, 망간, 암모니아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염소를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전용공업용수도**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연관어 : 전용수도]

**전용상수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연관어 : 전용수도]

**전용수도**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연관어 : 전용공업용수도, 전용상수도]

**전처리**

하수, 폐기물, 퇴비 등의 처리에 앞서 처리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미리 행하는 처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전처리시설**

하수 처리에 앞서 처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치되는 시설을 말하며, 스크리닝에 의한 대형 고형물의 제거, 수세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 응집제의 첨가 등이 포함된다.

**절수기기**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연관어 : 절수설비]

**절수설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연관어 : 절수기기]

**절수설비 등급제**

우수 절수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수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절수인센티브/ 절수지원금 제도**

물 사용자들이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등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한 경우에 부여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말한다.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수도요금체계를 말한다.

**점빈도해석**

확률통계학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임의의 크기를 가지는 수문량이 발생하는 빈도를 선정하거나 어떤 빈도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수문량의 크기를 예측하고 싶은 경우 특정한 임의의 지점에서 관측되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수문량의 빈도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점우량**

특정 지점에서 관측되는 강우량을 말한다.

**접근수로**

여수로에 있어서 저수지에서 조절부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접근유속**

오리피스, 위어, 여수로, 교각 등 수공구조물에 접근하는 물의 평균유속을 말한다.

**접촉산화법**

생물막법의 일종으로 반응조 내의 접촉재 표면에 부착되어 생물막을 형성한 호기성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의해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접촉조**

처리수 등을 염소 등 소독제와 혼화 및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접합정**

도관로의 수두를 분할해 적당한 수압을 유지하게 하여 관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관의 분기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수로에서 변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정량펌프**

일정한 양의 물을 토출하는 소용량의 용적 펌프를 말한다.

**정류벽**
(整流壁)

물을 정체시키지 않고 균등하게 흘리기 위하여 침전지 등의 내부에 설치하는 유공벽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정밀여과막**

정밀여과법에서 사용하는 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MF 막]
[연관어 : 나노여과법, 역삼투법, 한외여과법]

**정밀여과법**

정밀여과막 모듈을 이용하여 부유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체거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정밀여과장치**

수중에 있는 미량의 탁질을 여과하여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사영상**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 등의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 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

[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정상류**
(定常流, steady flow)

수위, 유속 등의 흐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말한다.

[연관어 : 부정류]

**정수**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정수기**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 포함)로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정수기 설치관리자**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정수기 품질검사**

정수기에 대한 구조·재질·정수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정수시설**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을 통하여 원수를 음용이 가능한 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수장**

수도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도록 원수를 정화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수지**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과수량과 송수량 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완화시키며, 사고나 고장에 대응하고, 상수원과 수질의 이상시에 수질변동에 대응하며, 시설의 점검과 안전작업 등에 대비하여 정수를 저류하는 탱크를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정적세굴**

하상 내 흐름의 소류력이 한계소류력 이하이어서 세굴 발생지점 상류로부터 세굴공 안으로 유사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굴이 발생하여 세굴공에서는 국부적으로 유사 유출만 발생하여 세굴공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평형 세굴심에 도달하게 되는 세굴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국부세굴, 동적세굴]

**정체수역**

호소, 저수지, 댐 등 유속이 매우 작아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정화기작**

정수식물이 번성하는 수질정화 습지나 하안, 호수 등에서 정수식물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정화작용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연분해와 침전 등의 작용으로 정화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또는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을 업무범위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지류**

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

**제내지** (堤內地)

하천 제방의 안쪽으로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을 말한다.

[연관어 : 제외지]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제방방어선**

제방방어의 관점에서 그어지는 선으로서 한번의 홍수로 인해 침식될 가능성이 있는 고수부지 폭을 제방 앞 비탈 끝에서부터 이은 선으로, 고수호안 쪽으로 더 이상의 저수로 침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제방법선**

제방의 앞 비탈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제방여유고**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 높이를 말하며,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및 파랑 또는 지진해일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제방정비**

시·도지사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각 1회씩 실시하는 관할구역내의 하천제방에 대한 일제정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방정비율**

하천정비(제방)가 필요한 연장에 대한 제방정비 완료구간과 제방보강 필요구간의 비율을 말한다.
[유의어 : 하천개수율, 하천정비율]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제외지**
(堤外地)

하천 제방의 바깥쪽으로서 하천측 지역을 말한다.
[연관어 : 제내지]

**제해시설**
(除害施設)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가 공공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에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조도**
(粗度, roughness)

수로 등의 바닥면 또는 벽면의 거친 정도를 말하며, 이를 사용하여 수로 흐름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에너지 손실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조류**
(藻類, algae)

수중에서 서식하며 광합성으로 독립적인 영양생활을 하는 하등 식물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조류경보제**

남조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조류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류경보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조수간만**

간조와 만조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조위편차**

계산조위와 실측조위의 편차를 말한다.

**조절부**

여수로에 있어서 저수지로부터의 방류를 제한·차단하고 조절하는 여수로의 물넘이 부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조절형 여수로**

여수로 조절부에 유량조절시설(수문, 제수밸브 등)을 설치하여 저수지로부터의 반류를 조절하는 여수로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조정감액수량**

수도사업자의 책임에 의한 적수, 탁수, 누수 등으로 인해, 측정수량 중 수도사업자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말한다.

**조정조**

침전슬러지 및 세정배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질적·양적으로 조정하여 농축 이후의 일정 처리로 연결하기 위한 조정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조정지**
(調整池, regulating reservoir)

1) 비가 오거나 홍수와 같이 빗물이 불어나거나 수질이 변동이 큰 경우, 균등하게 유량이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못을 말한다.
2) 수도용수 공급사업에서 송수량 조정이나 이상시의 대응을 위해 정수를 저장하는 못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1], 상하수도용어집2]]

**종속영양생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능력이 없이 외부로부터 탄소원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생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종합기상 정보시스템**

국내외의 모든 기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저장, 분배하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주민지원사업**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주운**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하거나 교통하는 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수운]

**주운댐**

선박이 수위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갑문시설이 갖추어진 댐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주운수로**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이 유지될 수 있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주운시설**

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주의보수위**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를 말한다.

**주입정**

대수층으로 물을 주입하기 위해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준설**

하천, 저수지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의 토사를 파서 퍼내는 것을 말한다.

**준설오니**

호소를 준설한 준설토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고 남은 갯벌 등을 말한다.

**준피압대수층**

대수층의 상부에 존재하는 피압지하수가 누수성을 갖는 대수층을 말한다.
[연관어 : 피압대수층, 비피압대수층]

**중간배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간유출**

지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표와 근접한 상부토층을 통해 하천으로 이동하여 흐르는, 포화 또는 불포화 상태의 유출을 말한다.
[유의어 : 지표하 유출]

**중간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계펌프장**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서는 관로연장이 긴 경우 하류로 갈수록 관거의 매설깊이가 깊어지므로 하수를 지표 근처까지 양수한 후, 펌프장이나 처리장으로 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장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중권역**

「물환경보전법」 상의 수계영향권 구분에 따른 중규모 권역을 말하며,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연관어 : 대권역, 소권역, 표준유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4대강 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중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는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중금속**

주기율표 상의 아래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비중 4 이상의 무거운 금속원소를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중기예보**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 4일에서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출처 : 예보업무규정]

**중력수**

중력에 의해 간극 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을 말한다.

**중력식 부벽댐**

경사진 얇은 슬래브를 상류면으로 하며, 이를 부벽으로 받친 형식의 댐을 말한다.

[출처 : 댐시설기준]

**중력식 아치댐**

댐의 단면을 아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수압·댐체의 자중 등 댐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댐 기초와 댐체 양안의 기초로 분산시키는 형식의 댐을 말한다.

**중수도**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수도의 기술지원사업**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중수도의 기술지원사업,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사업)의 하나를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또는 재검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 종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중앙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도록 환경부장관이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중점관리 저수지/호소**

총 저수용량이 1,000만 ㎥ 이상,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또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수지를 말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중화처리**

알칼리성 또는 산성용액을 산이나 알칼리제를 이용해서 중성 부근까지 중화시키는 폐수처리 과정을 말한다.

**증발량**

대기에 노출되어 설치된 표준증발접시에서 지정된 기간(시간) 동안에 증발한 물의 깊이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증발산량, 증산]

**증발산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연관어 : 증발량, 증산]

**증산**

식물체 내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증발량, 증발산]

**지구 내 저류시설**

강우 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로하는 저류 방식(공원저류, 운동장저류, 주차장저류, 건물주변 공간저류 등)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우수저류시설, 지구 외 저류시설]

**지구 외 저류시설**

강우 시 유출되는 우수를 임의 유역지점에 집수·저류하고 하류하천의 수위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물(유수지, 저류지 등)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우수저류시설, 지구 내 저류시설]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지구대기 감시관측**

지구대기 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출처 : 기상법]

**지능형 물관리**

물관리 노하우와 다양한 디바이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물의 안정성,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모델로,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공급 전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적 수량·수질관리를 말한다.

**지능형 상수관망**

상수관망 누수감시, 수질제어, 매설위치 모니터링 및 개량·진단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설치·운영되는 정수장부터 수용가까지 상수관망 전반의 지능형 자동제어가 가능한 상수관망 시스템을 말한다.

**지류**

하천의 본류로 유입되는 물줄기를 말한다.

[유의어 : 지천]
[연관어 : 본류]

**지리정보시스템**

지형지세 등의 제반자료를 관측 및 측정하고 생성, 저장, 관리기능으로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GIS]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출처 : 수도법]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연관어 : 소하천, 국가하천]

**지상** (地象)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출처 : 기상법]

**지상현황측량**

평판, 토털스테이션, GPS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수전** (止水栓)

급수를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급수관에 설치하는 밸브를 말한다.

**지역 물환경 종합정보망**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는 물환경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지역 수자원관리계획**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할구역의 지하수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역 토양보전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토양보전계획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지역 홍수빈도해석**

수문량의 관측기간이 빈도해석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지역에서 다수의 수문관측지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특정 빈도의 홍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역용수**

농어촌지역의 경관기능 보전 및 친수활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방용수, 수로수심 유지, 소수력발전 등 지역사회 활동용수, 경관보전과 친수공간 조성, 공원 이용 등 레크리에이션 용수, 수생태계보전 등 환경용수 등을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농촌의 자연정화기능 및 수환경의 환경적 보전과 문화적 기능 강화를 만족하는 용수를 말한다.

[출처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지역환경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지열냉난방시설**

지하 암석 및 지하수가 갖는 지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지천**

본류하천에 합류되는 지류하천을 말한다.

[유의어 : 지류]

**지표면 유출**

강우 시 지표면을 따라 강수가 흘러 지상의 수로 또는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유의어 : 지표유출, 표면유출]

[연관어 : 지표하 유출]

**지표수**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물로서 보통 하천 또는 호소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표류수]

**지표하 유출**

지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표와 근접한 상부토층을 통해 하천으로 이동하여 흐르는, 포화 또는 불포화 상태의 유출을 말한다.

[유의어 : 중간유출]

[연관어 : 지표면유출]

**지하(수)댐**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그라우팅 등을 통한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지하수 저류량을 늘린후 관정 등을 통해 개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지하댐, 지하(수)저수지, 지하수저류지]

**지하수**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말하며,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이용 실태 및 계획, 보전계획,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등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면**

불포화대와 포화대의 경계면, 즉 포화상태의 지하수가 갖는 최상위면을 말한다.

**지하수법**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분수계**

하나의 지하수 수계와 다른 지하수 수계를 나누는 경계선을 말하며, 지하수 수위면의 능선에 해당한다.

**지하수영향구역도**

지하수의 양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실제의 공간 범위를 말한다.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위**

지층 내의 어느 지점에 우물을 설치하면 그 지점의 수압에 상당하는 높이만큼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상승한 물표면의 높이를 말한다.

**지하수의 양수능력**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 이용부담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또는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저수지/ 지하수저수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그라우팅 등을 통한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지하수 저류량을 늘린후 관정 등을 통해 개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지하(수)댐, 지하수저류지]

**지하수정보체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정화업**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지하수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포함한다.

[출처 : 지하수법]

**지하수조사연보**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개발·이용특성, 수질현황 등을 포함하는 지하수 분야 통계연보를 말한다.

**지하수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수층**

지하수를 저류하고 있는 고결 또는 비고결 지층을 말한다.

**지하수함양**

지표로부터 침투한 물이 지하수 대수층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지하저류조**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부를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지하하천**

하도가 터널로 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인공적 하천을 말한다.

**직접유출**

강우 시 지하로 침투되지 않고 지표면 유출 또는 지표하 유출의 형태로 바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유출률**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집수**

빗물이나 지하수가 지형적으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하천으로 모이는 현상을 말한다.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유의어 : 유역, 배수유역, 배수구역]

**집수매거**
(集水埋渠)

하상 밑이나 구 하천부지 등의 땅 속에 매설하여 집수기능을 갖는 관거로서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자유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집수면적**

강수가 내려 집중되는 하천이나 수계의 면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유역면적]

**집수암거**

하천부지 또는 선상지 등의 지하에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으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용어사전]

**집수정**

대수층에 우물통을 설치하고, 그 측벽에 다공 집수관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모으기 위한 우물을 말한다.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에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찌꺼기**

하수처리과정에서 수중의 부유물이 중력 작용에 의하여 물로부터 분리되어 침전지의 바닥에 침전한 고형물을 말한다.

[유의어 : 슬러지, 오니]

**찌꺼기 처리**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찌꺼기를 농축, 소화, 탈수, 건조, 소각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찌꺼기 처리시설**

생찌꺼기, 잉여찌꺼기를 효율적이고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감량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차수막**
(遮水幕, water barrier)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막형태의 시설을 말하며, 설치방향에 따라 연직 차수막, 표면 차수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수벽**
(遮水壁, cutoff wall)

암석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댐에서 저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댐 본체의 상류측 표면 또는 중앙부에 설치하는 불투수성 벽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차집관로**
(遮集管路, intercepting sewer)

합류식 지역의 비강우시 오수와 강우시 일정량의 빗물이 포함된 하수를 우수토실에서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관로를 말한다.

**착수정**
(着手井, receiving well)

도수시설에서 도수되는 원수의 수위변동을 안정시키고 원수량을 조절하여 다음에 연결되는 약품주입, 침전, 여과 등 일련의 정수작업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착정**
(鑿井, well drilling)

천공기계를 사용하여 우물을 파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참여형 하천관리**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하천 감시, 쓰레기 수거, 유해 식물 제거 등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참조하천**

복원사업에 있어 교란된 하천의 원래 모습과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기준과 목표가 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유의어 : 대조하천, 비교하천]

**채수**

시험연구 대상이 되는 물(하천수, 호소수, 하수, 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에서 시험 연구용 시료수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목표수질**

하수처리과정을 거쳐 방류되는 처리수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처리수**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천공**
(穿孔, boring)

지각 내부의 정보파악 및 자원개발을 위하여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천변저류지**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등을 이용하여 계획홍수를 초과하거나 일정 수위 이상 발생되는 유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강변저류지]

**천수**

지하수중 대기로부터 유래된 물, 즉 물의 대순환 과정 중 주로 강우로 인한 지하 침투로 생성된 물을 말한다.

[출처 : 지하수용어사전]

**천수화**
(淺水化)

토사가 하구에 퇴적되어 수심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천층지하수**
(淺層地下水, shallow ground water )

일반적으로 깊이 30 m 정도까지의 천부의 지하수를 말한다.

[연관어 : 심층지하수]

**첨두부하**

어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하량(오염부하량 등)의 최대치를 말한다.

**첨두유량**

유량수문곡선 상에서 가장 큰 유량 값을 말한다.

**첨두홍수량**

홍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첨두유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첩수로**
(捷水路, shortcut)

현저하게 사행되었거나 굴곡된 하도를 절개하여 짧게 연결한 수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체류시간**

물탱크나 저수지 등에 유입된 물이 유출되기까지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말한다.

**초과강수량**

지표면의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저류되지 않고 직접유출되는 강수량을 말한다.

**초과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초과배출이익**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초과용량**

홍수위에서부터 최고수위까지의 용량을 말하며, 이 용량은 설계홍수와 여수로 방류능력 및 저수지 조작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의어 : 이상홍수용량]

**초기손실**

강우로 인해 직접유출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손실우량을 말하며, 식물이나 지형에 의한 차단 및 흡수, 토양으로의 침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초기우수**

강우초기에 발생하는 하수를 말하며, 관거 내와 노면에 퇴적한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고농도인 경우가 많다.

**초단기예보**

발표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출처 : 예보업무규정]

**초생수로**
(草生水路, grassed waterway)

경작지로 유입되거나 또는 경작지에서 나오는 물을 유도하는 수로 중에서 토양의 침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수로표면이 풀로 덮은 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총량관리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총용존고형물**
(total dissolved solids; TDS)

물속에 용해된 미네랄, 염분, 금속, 양이온, 음이온 등의 용해성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물질의 농도로서 물 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총인**
(total phosphorus; TP)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입자성 인, 유기성 인, 폴리인산염, 인산염이온 등)의 총 농도를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총저수용량**

댐 바닥에서부터 홍수위까지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총 저수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총질소**
(total nitrogen, TN)

물 속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의 총량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최고수위**

1)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고의 하천수위를 말한다.
2) 가능최대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상승하는 수위로서, 저수지의 목적별 수위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연관어 : 사수위, 상시만수위, 저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최고수위계**

최고수위만 관측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수위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최고조위**

조석의 승강 운동 중 고조시의 조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최대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대의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최소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소의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최심하상고**

하천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의 지반고를 말한다.

**최저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저의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최종침전지**

하수처리장에서 각종 처리를 행한 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고형분을 침전시켜서 처리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침전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다층식 침전지, 최초침전지]

**최초침전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가 최초로 통과하는 침전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다층식 침전지, 최종침전지]

**축산폐수**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액체 또는 고체성의 오염된 물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축산폐수처리장**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충적층**

유수의 작용으로 형성된 쇄설성 퇴적층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충적토**

유수에 의해 운반되어 퇴적된 흙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

상수도와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필요한 수량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취수관**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수중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구**

저수지, 하천 등에서 수로에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댐**

수요지로 물을 보내기 위해 상시유량을 조절하고 수로·운하 등 송수시설에 수두를 제공하기 위한 댐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취수로**

수원지 및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문**

취수구에 설치하는 수문으로 취수구를 막거나 취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문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보**

하천에 보를 쌓아올려서 계획수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취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만들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취수시설**

수원에서 소요수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취수관, 취수탑, 취수문]

**취수암거**

지하수가 풍부한 하천부지 인근 지하에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율**

각종용도(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에 이용하기 위한 취수량의 하천유출량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장**

강이나 저수지의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취수정**

물을 취수하기 위해 펌프의 흡입관을 설치한 관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취수탑**

하천, 호소, 댐의 내에 설치된 탑모양의 구조물로 측벽에 만들어진 취수구에서 직접 탑내로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취수틀**

하천이나 호소의 하부 수중에 매몰시켜 만드는 상자형 또는 원통형의 취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취약종**

멸종 위험에 노출되어 매우 취약하게 된 종을 말한다.

**취입보**
(取入洑, diversion weir)

하천의 수위가 낮은 경우 수위를 상승시켜 물을 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 등을 가로질러 설치한 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배사구, 어도, 침사지]

**측방유동**

단단하지 못한 지반의 흙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변형하여 측방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층류**

유속과 압력이 규칙적인 흐름으로 유체가 평행한 층을 이루며 흐르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 : 난류]

**치수**

물을 다스려 가뭄 및 홍수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치수경제조사**

치수 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치수기능**

홍수·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수로 증설 등을 통해 댐의 방류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의어 : 홍수방어능력 증대사업]

**치수현황조사**

하천유역조사의 항목으로서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친수**

수환경, 즉 물과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물과 자주 접촉하거나 물에 익숙해지는 것 등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친수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근린친수지구]

**친수공간**

하천 친수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서, 수면구역(수역)과 육상구역(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친수구역**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km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개발이익**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 증가분의 일부로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를 뺀 금액을 말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조성 사업 실시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 하천관리기금의 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성**

어떤 물질이 물과 강한 친화력을 가지며 상호작용하여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말한다.

**친수시설**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을 등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친수용수**

물놀이, 수상 스포츠 등 친수기능의 비소모성 물이용을 위한 물을 말한다.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근린친수지구, 친수거점지구]

**친수활동지수**

친수활동에 필요한 수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수질지표를 말한다.

**친환경청정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침루**
(浸漏, percolation)

강우가 지표면에 떨어진 후 지하수층까지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사제거기**

주펌프, 슬러지펌프 등의 마모 및 막힘방지, 관로의 모래퇴적으로 인한 유입하수의 유입곤란, 반응조에 모래가 침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입하수 중의 모래를 제거하는 설비를 말한다.

**침사조**

하수처리장에서 오수 중의 모래와 흙 따위를 가라앉혀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사지**

개발지역에서 침식되어 유송되는 토사를 자연 또는 강제로 침전·퇴적시킬 목적으로 만든 저류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침수**

홍수, 지반침강,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면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관어 :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재해정보지도]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침수흔적 조사**

현장방문조사 또는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의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시간 등 침수흔적을 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관어 :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침식**

바람, 눈, 얼음, 물 등의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의 암석이 깎여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윤면**

최상위 침윤선으로 이루어진 면으로서 제체층을 흐르는 중력수의 표면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윤선**

흙으로 쌓아올린 댐(어스 댐)이나 제방 등에 있어서 제체 안에 있는 물이 수위가 높은 쪽에서 제체를 횡단 방향으로 침투하여 반대쪽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제체 내에 만들어지는 수면선을 말한다.

[유의어 : 포화수선]

**침전**

수중의 부유물이 가라앉는 것을 말한다.

**침전조**

소형의 침전지로서, 수중의 현탁 물질을 밀도차를 이용하여 침강시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침전지]

**침전지**
(沈澱池, sedimentation basin)

현탁물질(물을 흐리게 하는 부유물질)이나 플록(물에 응집제를 혼합시켰을 때 형성되는 응집물)의 대부분을 중력침강작용으로 제거함으로써 후속되는 여과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연관어 : 침전조]

**침출수**
(浸出水, leachate)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침투**

물이 토양면을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말한다.

[연관어 : 토양침투]

**침투계**

토양의 침투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투능**

주어진 토양수분 조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침투율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하며,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연관어 : 우수침투시설]

**침투율**

단위면적의 토양면을 통하여 단위시간 당 침투하는 물의 양을 말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콘크리트댐**

콘크리트를 축조재료로 사용하는 댐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 E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탁도**

수중에서 부유물질이나 미립자들에 의해 빛이 분산되거나 흡수되어 물이 흐려진 정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탁질**

탁도를 야기하는 물질을 말하며, 식물섬유, 미생물, 다양한 입자 등이 있다.

[출처 : 물백과사전]

**탄소중립**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탈리액**
(脫離液, supernatant liquid)

하수를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잉여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로 분해한 후 남은 액체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탈수기**

농축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탈수여액**

농축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여액을 말한다.

**탈인법**

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며, 화학적 약품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이 있다.

[출처 : 물백과사전]

**탈취설비**
(脫臭設備, deodorization facilities)

환경시설의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말하며, 약품세정방식, 흡착제(흡착을 받아들이는 고체물질) 흡착방식, 생물탈취방식 등이 있다.

**테스트베드**
(test bed)

기술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사용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해보는 환경을 말한다.

[유의어 : 실증화시설]

**토구**
(吐口, sewer outlet)

하수도 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용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방류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우수토구]

**토사유출량**

유역의 생산 토사가 흐름에 의해 생산지를 떠나 하류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유사의 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토사재해**

유역 내 과다한 토석류 유출 등이 원인이 되어 하천시설 및 공공·사유시설의 침수 및 매몰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토양관련 전문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기관을 말하며,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하며,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토양오염의 방지,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수립,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하며,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 방안,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 대책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수분량**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으로서 토양표본에 포함된 건토의 질량에 대한 수분의 질량비나 부피에 대한 수분의 질량비를 말한다.

[출처 : 수문조사 업무규정]

**토양오염**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대책기준**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실태 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유기물**

식물, 동식물의 사체 및 배설물 등이 분해되어 부식으로 변환된 토양 중의 유기물을 말한다.

**토양유실량**

비바람에 의해 지표면의 표토가 침식되거나 산지 붕괴 등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져 흐름과 중력 등에 의해 하류로 이동이 가능한 토사의 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토양정밀조사**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 공제조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업**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침투**

물이 토양면을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침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센터**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활용,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배포하고 있는 방대한 토양, 농업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조사,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토양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토양환경지도**

토양 및 농업환경 특성에 대한 GIS 지도서비스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토지이용도**

토지이용 현황을 이용 목적별로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토출관**
(土出管, delivery pipe)

펌프에 부속되어 있어 펌프에서 빨아 올린 물을 펌프보다 높은 위치로 토출하는 관을 말한다.

**토출량**

펌프 등을 이용하여 토출관으로부터 단위시간에 내보내는 수량을 말한다.

**통관**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짝을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통기대**
(通氣帶, vadose zone)

지하수면 위쪽으로 공극이 지하수로 포화되지 않은 토양층을 말한다.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짝을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통수능**

주어진 경사에서 수로의 통수능력, 즉 얼마나 큰 유량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통합물관리/
통합수자원관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연관어 : 유역통합관리]

**통합홍수예보
시스템**

강우예측, 지점예보, 공간홍수예보, 행정구역 사전 홍수위험전망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홍수예측 통합 지원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의 신속한 홍수위험 전달체계를 말한다.

**퇴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를 말한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퇴적**

다른 지역에서 운반되어 온 고체물들이 지표면에 쌓이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퇴적물**

퇴적된 물질을 말한다.

**퇴적층**

퇴적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층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투과수제**

흐름의 일부가 수제 본체를 투과하여 유속을 감소시키고, 토사를 침전시키는 수제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투수계수** (permeability)

단위시간 동안 단위단면적의 흙이나 암석 사이를 침투하는 물의 유출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수리전도도]
[연관어 : 투수량계수]

**투수량계수** (transmissivity)

포화대의 두께에 투수계수를 곱한 값으로 대수층의 물의 투수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

[연관어 : 투수계수]

**투수블럭 제조업**

빗물의 침투·저류·배수를 위해 활용되는 투수블럭(투수성이 좋은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럭)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수성포장**

지하수함양, 우수유출량 삭감 등을 목적으로 도로 등의 포장면을 다공성의 상태에서 투수성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투수시험**

대수층인 토양이나 암석의 투수계수를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투수율**

공극을 포함하는 지층이 지하수 등의 유체를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트리할로메탄전구물질**

정수과정에서 원수에 염소소독을 실시하였을 때 염소와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을 생성하는 유기물들을 의미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출처 : 해양환경관리법]

**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둘 수 있는 협의회를 말한다.

[출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량조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특정유해물질**

유해 화학물질 중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준다고 판명된 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연관어 : 특정대기 유해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파라페트월**
(parapet wall)

파랑으로 인한 제체의 월류 방지, 댐 축조량, 기초굴착량, 차수벽 면적 경감 등을 목적으로 댐 마루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유의어 : 홍수방지벽]

**펄스방류**
(pulse discharge)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 유속을 증대시키고 강물의 상·하층을 섞어주는 방류방식을 말하며, 남조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펌프정**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 올릴 때 공급량의 변화에 대비하여 물을 조정·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조를 말한다. 취수시설에 이용하는 취수펌프정과 송수시설에 이용하는 송수펌프정이 있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연관어 : 취수펌프정, 송수펌프정]

**평균유량**

1년 동안 185일은 이보다 많은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평균저수위**

호소나 하천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평균수위보다 낮아진 수위들의 평균값이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평균하상고**

주어진 하천단면에서의 평균적인 하상고를 말하며, 통수단면적을 수면폭으로 나눈 값을 수위에서 빼서 구한다.

[출처 : 하도정비지침]

**평균해 (수)면**

해수면 변화의 전체 주기동안 일정 간격으로 측정한 해면의 높이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평년강수량**

어떤 지역에서 30년 이상의 연 강수량의 평균값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평수기**

계획홍수량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수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평수량**

1년 동안 18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연관어 : 갈수량, 저수량, 풍수량]

**평수위**

1년 동안 18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갈수위, 저수위, 풍수위]

**평형경사**

퇴적이나 세굴에 의한 하상변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즉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의 하상경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평형하상**

임의의 하도구간 내에서 유사의 유입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어 하상세굴이나 퇴적의 경년변화가 거의 없는 평형하천에서의 하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안정하도]

**평형하천**

하나의 하천구간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하류로 유출되는 유사량이 같아 그 하천구간에서 퇴적이나 침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고 하상의 상승이나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폐쇄공**

댐 또는 하천 공사 시에, 댐 또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가배수로를 공사완료 후 폐쇄하는 공사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수 처리시설 운영업**

공공 폐수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수관로**

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폐수위탁사업자**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폐수처리**

폐수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폐수처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수처리업**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연관어 :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폐천부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포기/폭기**
(曝氣, aeration)

수중에 공기를 불어 넣거나 공중으로 물을 분산시켜 물과 공기를 충분히 접촉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포기조**

공기를 송풍기로 가압하여 불어넣어 호기성 미생물(산소가 공급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에 의해 하수속의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반응조를 말한다.

**표류수**

지표면 위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 : 지표수]

**표면부하**

침전지 등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해 흐르는 처리수의 수량을 말한다.

[유의어 : 수면부하, 수면적 부하]

**표면부하율**

침전지 따위에서 단위 면적당 하루에 유입되는 물의 부하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표면영상유속계**

비접촉식 유속 측정 장치의 하나로 수면의 영상을 촬영하여 하천 수면 유속을 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표면유출**

하천으로 유입되는 강수 중 지표면만을 흘러 유로에 도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표준유역**

수자원단위지도 상의 가장 세분화된 유역을 말하며, 국가, 지방 하천의 합류점, 댐, 수위표지점 등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표층지하수**

암반층위의 지표근처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

**풍수량**

1년 동안 9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시설기준]

[연관어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위**

1년 동안 9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를 말한다.

[연관어 : 갈수위, 저수위, 평수위]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플러싱**
(flushing)

짧은 시간 동안의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관 또는 수로의 이물질, 오염물질 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피압대수층**

낮은 투수계수를 갖는 상하부 지층 사이에 형성되어 압력을 받고 있는 대수층을 말한다.

[연관어 : 비피압대수층, 자유면대수층]

**피압지하수**

상부와 하부가 점토층과 같이 물이 통하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어 대기압보다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대수층의 지하수를 말한다.

**필댐**
(fill dam)

암석·자갈·토사 등의 천연재료를 층다짐하여 축조한 댐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하구**

하천수가 바다나 호수 또는 다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구시설**

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구언**

바닷물을 막아 염해가 없는 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물을 저수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수자원 개발시설을 말한다.

[유의어 : 하굿둑, 하구댐]

**하구호**

하구언 설치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굿둑**

강의 하류에 해수의 침입을 막고, 담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쌓은 둑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하구언, 하구댐]

**하도**

평상시 혹은 홍수 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 생태가 서식하는 공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도저류**

자연하천의 하도구간에서 수위변화에 따라 구간내에 물이 저류되는 것을 말한다.

**하도추적**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 또는 저류방정식을 이용하여, 하도로 유입되는 유입량 수문곡선으로부터 하도의 종점 또는 하도 내 여러 지점에서의 유량, 또는 유량 및 수위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류**

하천 구간의 중간 이하의 지점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부집수장치**

여과과정에서 여과수를 모으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상**

하도 내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상경사**

하상의 종단방향 경사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상계수**

하천 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연도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유량변동계수]

**하상물질**

하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하상변동조사**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하상상승**

하천 상류로부터 장기간 동안 토사가 이동하여 하상에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상세굴**

유수의 소류력으로 인해 하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침식되어 쓸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상유지공**

종방향 침식을 방지하고 하상을 안정시키므로써 하상 퇴적물의 재이동, 하안의 붕괴 등을 방지하며 호안 공작물의 기초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상유지시설**

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 및 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낙차공, 대공]

**하상재료**

하상 바닥을 구성하는 침전된 토사 혼합체를 말한다.

**하상저하**

상류로부터 공급되는 유사량보다 이송되는 유사량이 많아 하상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상침식**

하천 바닥에서의 침식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상피복**

소류력에 의해 작은 입자들이 이송되어 입경이 큰 입자들만 남아 하상을 덮으면서 유사이송이 방해되어 하상이 안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연관어 : 오수, 우수]

**하수 재이용수**

하수나 폐수를 재이용할 목적으로 수처리(정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 폐수 잔류물 처리 및 분뇨처리업**

하수 및 폐수 등 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남겨진 이물질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 사람 및 가축 분뇨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수관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연관어 : 오수관로, 우수관로]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도 시설 및 재이용 시설 운영업**

하수도 및 하수 재이용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수도법**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인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를 총 인구 (행정구역내의 계획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수립하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도정비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2011.11)]

**하수배제방식**

물을 이용한 뒤 발생되는 하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집수하고, 이를 하수처리장까지 배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구분된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찌꺼기**

하수처리의 각 공정에서 발생하여 집수된 찌꺼기를 말한다.

**하수처리**

하수를 하수관로로 수집하고 하천과 해역 등으로의 방류에 적합한 수질로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수처리구역**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하수처리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가정이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관거를 통하여 집수하여 생물학적·물리화학적 처리공정을 통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하수처리율**

하수의 총량 중 인공적으로 정화되는 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안**

하도 내 수면이 비탈면과 접하는 선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역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안방어선**

제방의 안전성과 저수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적 대책(저수로호안, 하안침식방지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하도계획 상의 선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안침식**

하안이 깍여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중도**

하천수에 의하여 운반된 퇴적물이 하도에 쌓여 된 섬을 말한다.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 준설 토목공사업**

하천·수로 등 준설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천개수**
(河川改修, river improvement)

홍수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수능을 증대시키는 하천공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하천건천화**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게 되거나 유량이 적어져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건천화]

**하천경사**

하천의 흐름방향 경사로서 일반적으로 하천지형, 즉 하상의 경사를 말한다. 하천흐름에 대한 경사로서 수면의 경사를 뜻하기도 한다.

**하천공간**

하천의 수량 및 수질과 더불어 하천환경의 3대 요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면을 포함한 그 주변 하천부지와 섬, 댐 및 제방 등 하천을 주체로 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하천공사**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포함)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하천공사 실시계획**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하천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하천관리 정보체계**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해야 하는 정보체계를 말하며,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 및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하천정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하천관리기금**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출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천관리대장**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조서와 현황대장조서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유량**

하천유지유량과 유수점용을 위하여 필요한 이수유량을 합한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하천유지유량, 환경보존유량, 환경생태유량]

**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구역**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제방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망**

하천의 본류와 지류들의 분포형태를 말한다.

[유의어 : 수계망]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하천밀도**

유역내의 지류가 많고 적음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본류와 지류를 포함한 전체하천의 총 길이를 유역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법**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보**

하천 내 유수를 가로막아 수위를 높이고 용수를 취수하거나 또는 수위와 유량의 조절, 배분 등을 하기 위한 수리구조물을 말한다.

[유의어 : 보조수원]

**하천복원**

훼손된 하천의 생물 서식처, 자정, 경관과 친수성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부속물**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등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하천부지**

하천에서 유수가 흐르는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천생태계**

물과 수변에서 생물과 무생물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하천복원에서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되는 역동적인 유수생태계를 말한다.

[출처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하천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을 말하며,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수**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수 사용관리시스템**

전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하천수 사용실적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천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하천수 사용료**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수 사용의 조정**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하천법」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수 사용허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수 사용허가 가용유량**

해당하천의 기준유량, 기존 하천수 허가량 및 물수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 값으로, 신규허가가 가능한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을 말한다.

[출처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수 조정협의회**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수계**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본류와 지류들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연관어 : 수계]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및 운하·안벽·물안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등을 포함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연장**

하천의 종단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유사량**

하천 흐름에 의해 하도 내에서 소류사나 부유사의 형태로 이송되는 토사의 양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유역**

하천의 어느 일정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집수구역)를 말한다.

[출처 : 한국하천일람]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유역조사**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하천유역의 이수현황 및 치수현황, 하천 환경,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유지용수**

댐 등 저류시설의 용수공급 항목(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등)에 포함되는 용어로, 하류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물(연간 총 수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냄)을 말한다.

[연관어 : 환경개선용수, 환경대응용수]

**하천유지유량**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연관어 : 하천관리유량, 환경보존유량, 환경생태유량]

**하천자연도**

수로의 발달, 종·횡단면, 하상(하천의 바닥)구조, 저수로변 구조, 하천주변을 고려하여 총 6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재해**

홍수발생시 하천 제방, 낙차공, 보 등 수공구조물의 붕괴와 홍수위의 제방 범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하천정비계획**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 및 저감,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존·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지침]

**하천정비율**

하천정비(제방) 현황을 나타내며 하천정비(제방)가 필요한 연장에 대한 제방정비 완료구간과 제방보강 필요구간의 비율로서 하천정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출처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유의어 : 제방정비율, 하천개수율]

**하천정화기법**

자연하천이 갖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인 물리·화학·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보강·보완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혹은 단위 유로당 물질 전환속도를 촉진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정화시설**

유역 내 사회활동(가정생활 포함)의 대사산물의 과다유입으로 하천 자체가 가지는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하천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또는 열악하게 된 상태를 본래의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자연보전 행위의 총체적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종단(도)**

하천에서 주흐름방향 유하거리를 횡축으로 하여 종측에 제방고, 최심하상고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천주제도**

GIS 기반의 자료들을 활용, 다양한 공간분석을 통하여 도면 및 속성정보로 2차 가공자료를 생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하천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한 것을 말한다.

**하천차수**

하천의 분기 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1차, 2차 등으로 부여하는 수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천측량**

하천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평면측량(지구의 표면이 평면인 것으로 간주하고 실시하는 측량), 수준측량(지상의 두 점 사이의 높이의 차이를 측정), 수위측정, 유량측정 등이 있다.

**하천표석**

측량기준점의 표석위치를 말한다.

**하천환경**

물과 그 주변공간 그리고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의 통합체로 이루어진 하천 그 자체로서의 자연적, 인공적 모습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환경 복원**

이·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나 불량한 유역 관리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생태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하천환경 정보도**

하천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하천환경조사에서 수집, 정리된 정보를 도면상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시화한 정보지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환경 현황조사**

하천유역조사의 항목으로서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회랑**
(河川回廊, stream corridor)

하천에서의 생물서식처와 하천의 물리적 기능(길이, 넓이, 깊이)이 결합하여 형성된 경관생태학적 측면의 하천통로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하천회복**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자연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지속될 수 있도록 형태적, 수문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폭**

하천의 너비로서, 제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 양안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재방이 없는 경우에는 홍수터의 경계라고 생각되는 지점 간의 거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계류**

등류수심이 한계수심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의 개수로 등류 흐름을 말한다.

**한계소류력**

흐름의 작용으로 인하여 하상 입자가 이동을 시작할 때의 하상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말한다.

**한계수심**

유량이 일정하고 비에너지가 최소이며, 또한 비에너지가 일정하고 유량이 최대일 때의 수심을 말한다.

**한계수질상태**

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 이하로 수질이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한국물기술 인증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물산업 협의회**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물포럼**
(Korea Water Forum; KWF)

우리나라 물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

기계·전기·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을 말한다.

[출처 :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산업표준화 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 서비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로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를 말한다.

**한국수문 조사연보**

우리나라 수자원분야 연구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토개발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 4대강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련 기관에서 관측한 수문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수록한 것을 말한다.

**한국하천일람**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 하천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하천관리 및 하천행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물인 한강-메콩강 선언문에 의거하여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통합수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유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성과 확산으로 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한외여과막**
(限外濾過膜, ultra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법에 사용하는 막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한외여과법**

한외여과막 모듈을 이용하여 부유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고분자 물질 등을 체거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연관어 : 나노여과법, 역삼투법, 정밀여과법, 한외여과막]

**할당오염부하량**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함양**

지표수가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합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합리식**

소규모 유역에 대하여 강우강도와 유역면적의 곱에 유역의 투수성을 반영하는 유출계수를 곱하여 첨두유출량을 산정하는 식을 말한다.

**항공사진측량**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로 세부도화를 실시하여 도화 원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해수담수화**

해수에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유의어 : 담수화]

**해수담수화시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출처 : 수도법]

**해양심층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개발업**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급수·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관련업**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해양심층수 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연구개발-기업지원-관광·레저-판매·홍보 등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단지를 말한다.

[출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처리수**

해양심층수를 탈염, 농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수리권**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수리권을 말한다.

[유의어 : 하천유수점용권]
[연관어 : 관행수리권]

**혁신형 물기업**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퍼센트 비율 이상의 투자를 하거나,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을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퍼센트 비율 이상으로 수출을 하거나,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 장치, 기기, 기술 및 공법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위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물산업 진흥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기업을 말한다.

[출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혐기성**

물속에 용존산소 및 질산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연과어 : 호기성]

**혐기성 소화법**

폐수, 분뇨처리에 있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비되는 효소의 작용을 통하여 유기물을 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혐기성 소화조**

혐기성 소화반응에 의해 하수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혐기성 처리**

찌꺼기 또는 하수 중의 유기물을 용존산소와 분자상 산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처리법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혐기조**

혐기성 세균에 의해 고농도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협잡물**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로 관로 내 퇴적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협착부**

통수단면적이 감소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호기성**

물속에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관어 : 혐기성]

**호기성여상법**

3~5 mm 정도의 여과재를 충전한 여상의 상부에 오수를 유하시켜 여상의 하부로부터 호기성 생물처리에 필요한 공기를 불어넣은 것을 말한다.

**호소**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또는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호안**
(護岸, revetment)

유수가 하안의 침식, 붕괴를 일으키는 장소에 횡방향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안에 따라 유수 방향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고수호안, 저수호안]

**호우**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한다.

**호우주의보**

호우로 인하여 다소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것을 일반인이나 관계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내리는 특보로서, 3시간 강우량이 6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연관어 : 기상특보, 호우경보]

**호우경보**

호우로 인하여 현저한 재해가 예상될 경우 이것을 일반인이나 관계기관에 경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로서, 3시간 강우량이 9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연관어 :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혼화지**
(混和池, mixing tank)

정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약품을 원수에 혼합하는 탱크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홍수**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홍수경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계위험 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홍수특보를 말한다.

**홍수관리구역**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하천법]

**홍수기**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홍수기 제한수위**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서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사수위, 상시만수위, 저수위, 최고수위]

**홍수량**

홍수시의 유역유출량 또는 하천유량으로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체적을 말한다.

**홍수로**

계획당시에 설정된 홍수량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수로를 말한다.

**홍수방어**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치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홍수방어 계획**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조사, 계획, 그리고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치수 대책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홍수사상**

하천유역에서 독립된 강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발생시 수반하는 하나의 수리·수문학적 현상을 통틀어 말한다.

**홍수예경보 시스템**

홍수예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강우 분석·예측, 댐·저수지 등 수리구조물의 모의 운영, 유역·하도의 홍수추적을 통해 예보지점의 수위를 예측하고,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통지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연관어 : 홍수예보, 홍수정보, 홍수특보]

**홍수예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제공하는 홍수정보와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하는 홍수특보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관어 : 홍수정보, 홍수특보, 홍수예경보시스템]

**홍수위**

1) 홍수시의 하천수위를 말한다.
2) 댐에서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로서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계획홍수위]

**홍수위험구역**

하천기본계획에서 기 고시된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과 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 및 그 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잠재홍수위험도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홍수위험지도**

홍수발생시 예상되는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 홍수피해 위험도를 나타내는 종이지도 또는 전자지도를 말한다.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홍수위험정보 제공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홍수위험지도 온라인 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홍수유출**

홍수시 유역에서 집수된 물이 하천을 통해 흐르는 것을 말한다.

**홍수정보**

홍수통제소장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정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등이 있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관어 : 홍수예보, 홍수특보, 홍수예경보시스템]

**홍수조절**

홍수로부터 하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길을 순회하거나 홍수량을 저류시키는 등 홍수량을 줄이기 위한 일을 말한다.

[연관어 : 홍수조절지, 홍수조절용댐, 홍수조절 구조물. 홍수조절 용량]

**홍수조절용댐**

홍수유출을 지체시켜 갑작스런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댐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홍수조절, 홍수조절 구조물, 홍수조절용량]

**홍수조절 구조물**

홍수조절을 위한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배제시설, 홍수조절용댐, 강변저류지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연관어 : 홍수조절,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배제시설, 홍수조절용댐,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용량**

상시만수위 또는 홍수기 제한수위에서 계획홍수위 사이의, 홍수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수공간을 말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연관어 : 홍수조절, 홍수조절지, 홍수조절 구조물]

**홍수조절지**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유의어 : 홍수조절댐]

[연관어 : 홍수조절, 홍수조절용량, 홍수조절구조물]

**홍수주의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단계 수위(계획홍수위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홍수특보를 말한다.

[연관어 : 홍수예보, 홍수특보, 홍수경보, 홍수예경보시스템]

**홍수추적**

하천의 상류 임의의 지점에서 기지의 홍수유출 수문곡선으로부터 하천 하류 임의지점에서의 수문곡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저수지추적, 하도추적]

**홍수터**

자연하천이나 무제부 하천구간에서 홍수 시 물이 흐르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홍수터복원**

치수기능 향상, 생태계 서식처 복원, 어메니티(amenity) 기능 복원 등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홍수터 공간을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홍수특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로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홍수통제소장이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수특보지점**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관어 : 홍수특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홍수파**

홍수시 수면의 상승기와 하강기로 구성되는 파를 말한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환경부장관이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침수위,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다.

[출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적 산소요구량**

오염물질을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유의어 : COD]

**확률강우량**

강우량 자료를 빈도분석 하여 산정되는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강우량을 말한다.

[연관어 : 설계강우량]

**확률강우강도**

특정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지속시간으로 나누어 강우강도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확률홍수량**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거나 홍수량 자료를 빈도분석해서 산정하는 재현기간별 홍수량을 말한다.

[연관어 : 설계홍수량, 계획홍수량]

**확산형 범람**

범람된 물이 지형에 따라서 확산하는 홍수범람을 말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환경**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연관어 :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개선용수**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 문화행사 등 자연·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 구간 및 지역에 필요한 물을 말한다.

[연관어 : 하천유지용수, 환경대응용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던 환경공간정보서비스와 환경주제도을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도서비스 및 환경주제도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환경기능**

동식물 서식처 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경관 및 친수기능 등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환경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초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4대강 수계법]

**환경대응용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확보된 수량 중 특정 시점의 수질개선에 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말한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연관어 : 환경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환경보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존유량**

주운, 하천관리시설의 보호, 수질보전, 어업, 하구폐쇄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동식물의 보호, 경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하여야 할 유량을 말한다.

[출처 : 댐시설기준]

[연관어 : 하천유지유량, 환경생태유량]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생태유량**

하천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연관어 : 하천관리유량, 하천유지유량, 환경보존유량]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용량**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용수**

강, 하천, 지하수의 자체 기능을 유지하고, 인간의 이용과 편익을 위해서 적정한 수량과 수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용수를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환경개선용수, 환경대응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환원수**

관개한 물 중 이용되지 않고 지표 배수로나 지하 흐름을 통하여 하류로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연관어 : 회귀수량]

**활성슬러지**

하수나 폐수에 생기는 세균 등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찌꺼기를 말한다.

[연관어 : 활성슬러지공법]

**활성슬러지공법**

생물의 대사작용(호기성 세균 등)을 활용하여 하수 중의 부패성 유기물 성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2차 처리에 주로 이용되는 하수처리법을 말한다.

[연관어 : 활성슬러지]

**활성탄**

다공질이며 흡착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탄소질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탈취, 탈색 외에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에도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용어사전]

**활용용량**

저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용량으로 이수목적의 활용용량과 홍수조절 용량을 합한 공간으로서 저수지의 이용할 수 있는 유효공간을 뜻한다.

[출처 : 댐설계기준]

**회귀수량**

이수목적에 의하여 사용 후 침투, 배수 등으로 하천으로 회귀되는 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 환원수]

**회유**

물고기가 알을 낳거나 먹이를 찾기 위하여 계절을 따라 일정한 시기에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떼 지어 헤엄쳐 다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흙막이**

비탈면의 흙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흙토람**

"토양의 정보를 열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브랜드명을 말한다.

**흡수정**

저수조처럼 수돗물을 받아 두는 용기로서,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상하수도용어집]

**흡착**

2개의 상(phase)이 접할 때, 그 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이 경계면에 농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희석**

농도가 다른 두 기체 또는 액체가 섞여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희석수]

**희석수**

하·폐수 처리를 위한 희석, 고농도 원수의 농도 측정을 위한 희석, 냄새 측정 등을 위해 시료에 첨가하는 물을 말한다.

[출처 : 물백과사전]

[연관어 : 희석]

# 4-5
# A-Z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Water Resources Water Environment
Practical Terminology Dictionary

**4대강 수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4차 산업혁명**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말하며,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및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이 있다.

**5대 권역**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구분한 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역을 말한다.

[출처 :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어이며,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한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어이며,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하여 분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한다.

**DCIA**

직접연결 불투수면적(Directly Connected Impervious Areas)의 약어이며, 도시 배수망과 직접 연결된 불투수면적을 말한다.

**DEM**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의 약어이며, 지표면 위의 모든 인공구조물과 나무, 식생들이 제거된 맨 땅의 높이를 격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연관어 : DSM]

**DO**

용존산소(Dissolved Oxygen)의 약어이며,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DSM**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의 약어이며, 지표면에 인공구조물과 나무, 식생들이 포함된 높이를 격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연관어 : DEM]

**GCF**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약어이며,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약어이며,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GIS**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어이며, 지형지세 등의 제반자료를 관측 및 측정하고 생성, 저장, 관리기능으로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GNSS**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어이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GPS 측량**

지구위치결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한 측량으로서 복수의 GPS 측량기를 이용하여 관측점간의 3차원 상대위치를 구하고 기준점의 측지학적 좌표 및 표고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GWI**

국제 물 정보원(Global Water Intelligence)의 약어이며, 2000년에 설립되어 물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민간 기업을 말한다.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약어이며, 통합 커뮤니케이션 역할 및 원거리 통신, 컴퓨터, 정보 접근 및 저장, 전송, 조작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스토리지,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IIA**

고립된 불투수지역(Isolated Impervious Area)의 약어이며, 도시 배수망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투수면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불투수 면적을 말한다.

**IoT**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약어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종 사물들 속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 시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의 약어이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LiDAR**

광파 탐지 및 거리 측정(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이며, 근적외선 및 가시광선, 자외선을 사용하여 대상물에 빛을 비추고, 그 반사광을 광 센서를 통해 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이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를 말하며,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이다.

**PMF**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의 약어이며, 가능최대강수량으로부터 발생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PMP**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의 약어이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RCS 지도**

하천회랑조사(River Corridor Survey) 지도의 약어이며,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식생의 분포, 중요 서식처 등을 정해진 기호나 약호를 이용하여 스케치한 지도를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TM**

원격측정(Telemetry)의 약어이며, 실시간 자동 자료 수집 방식을 말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발행일** | 2021년 12월 5일 1쇄

**발　행**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전　화** | 02-590-9999

**팩　스** | 02-590-9989